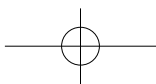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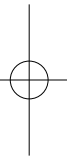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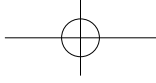


2010 아동보호전문기관 10주년 기념 아동학대 우수사례보고서







발간사

2010년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협력아래 학대아동보호사업은 많은 성과물을 내었고 그 결과 이제는 아동학대 문제가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피해아동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후 유증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학대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가족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회복을 돕고 있으며, 학대행위자에게는 학대유발요인을 감소시켜 재학대 방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노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자신보다 우선시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우수개입사례를 선정하여 상담원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아동학대사례 개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우수사례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기반이 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 개입이 더욱 전문화되고, 우리나라가 모든 아동들이 웃으며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희망합니다.

2010년 9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장 화 정**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존엄성과 권익을 추구한다.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은 아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상기하면서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우리는 아동 권리 옹호자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다짐을 밝힌다.

사명 선언

우리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 능력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한다.

행동 강령

하나, 우리는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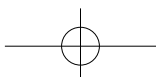
하나, 우리는 아동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에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전문인다운 자세를 유지하며, 책임감 있게 실천한다.





실천 수칙

I. 아동에 대한 실천

1. 아동 이익 최우선

》아동을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행정적·사법적·사회적·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개별 욕구 존중

》아동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알 권리 및 의사표현 존중

》아동에게 그들이 받을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아동에게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사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4. 차별 금지

》아동의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의 신념, 관습, 문화 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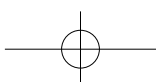
5. 사생활 존중 및 보호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단, 아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발달권 보장

》아동이 발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Ⅱ. 가족에 대한 실천

1. 가족 지원

》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심리적·정서적·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2. 부모 교육

》 보호자에게 아동의 권리, 발달과정, 올바른 양육 방법 등을 교육한다.

Ⅲ. 사회에 대한 실천

1. 아동 권리 홍보

》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2. 아동 권리 교육

》 아동은 권리의 주체임과 그 권리 보호는 모든 국민의 책무임을 알린다.

》 아동학대는 생애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임을 교육하여 그것을 예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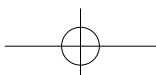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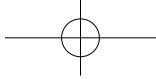
3. 협력체계 구축

》 아동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4. 국가 정책 참여

》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련 정책 입안 과정과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IV. 전문가로서의 실천

1. 윤리적 책임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2. 전문가적 판단

》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하게 사안을 판단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정보 보호

》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련 지침을 따른다.

》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옹호자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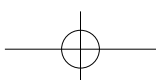
》 아동학대 관련인의 의사 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아동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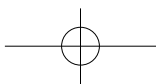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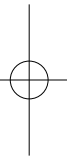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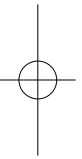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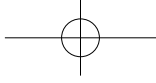
5. 자기 계발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

2008. 11. 19. 공포







2010 아동보호전문기관 10주년 기념*
아동학대 우수사례보고서

11 아동학대사례 개입의 발전방안
울산대학교 오승환 교수

아동학대 우수개입사례 1
31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유관기관 통합지원으로 위기에서 회복된 가정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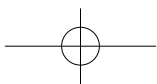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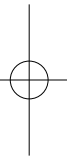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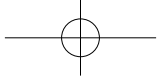
아동학대 우수개입사례 2
49 토끼가 구한 아이
경북안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우수개입사례 3
65 협력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시설 내 성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 개입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우수개입사례 4
77 친부에 의한 중복학대사례 “두 자매가 찾은 진정한 행복”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우수개입사례 5
87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어 행복해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우수개입사례 6
103 말할 수 있는 아이, 하지만 배우지 못한 아이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사례 개입의 발전방안

• 오승환 (울산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아동학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학대아동보호서비스가 공적인 아동복지체제로 편입된 것은 2000년 1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이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규정되면서부터이다. 2000년 이전에는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신고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만 민간기관과 아동복지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몇몇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을 뿐이다.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민간 기구로, 1985년 서울시립아동상담소가 설립한 ‘아동권익보호신고소’와 1989년 설립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하부조직인 ‘아동학대지역신고센터’가 설립되었다. 또한 1996년부터는 한국이웃사랑회가 16개소의 아동학대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한국어린이보호재단이 1999년 2월부터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를 개설하고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세이브더칠드런, 2004).

이러한 민간단체에 의해 다루어지던 아동학대 문제는, 1990년대 후반 몇몇 심각한 학대 및 방임 사건의 사례들이 대중매체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어 국가의 공식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게 되었다. 그 결과 2000년에 아동학대를 정의하고, 24시간 응급전화를 설치하며,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명문화하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렇게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2000년 10월부터 전국의 16개 시도에 17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와 접수,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9월말 현재 전국에 45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사업이 도입된 지 10년간 우리나라 공적인 학대아동보호사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발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양적인 성장을 살펴보면, 2000년 10월 17개소로 출발한 광역자치단체 담당의 지방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개소가 추가되어 19개소로 확대되었고, 2001년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소하여 전국적인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연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의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 그간 아동보호서비스의 대표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된 지역적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규모인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18개소가 추가로 개소하였으며, 2009년까지 7개소가 추가로 개소하여 총 25개소의 소규모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

소하여 활동 중에 있다.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초창기에 나타난 비체계적이고 비전문적인 서비스 개입의 문제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에 실시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 대부분의 센터가 아동복지법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한 2004년에는 복권기금을 지원 받아 16개 광역자치단체 담당 지방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일시보호기능을 하는 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기능을 제공하는 아동보호종합센터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양적 질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학대아동보호사업이 모든 아동을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게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항목들을 살펴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와 인력의 부족, 상담원의 근무여건과 법적 지위의 미비, 신고의무 강제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적 서비스 제공 등의 각종 법적 규정의 미비, 전문서비스의 부족, 관계기관과의 연계 미비 등이다(공계순, 2004; 오승환, 2004; 윤혜미, 2003; 이호균, 2004; 조운영, 2005).

또한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문제점 중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문제이다.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질이라는 점이 인식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업무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환경과 이들이 인식하는 업무만족도 그리고 소진의 정도를 파악하고,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상담원들이 효과적으로 학대아동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공계순, 2005; 윤혜미, 2005; 오승환·변귀연, 2010).

또한 전문인력의 확보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전 과정 즉 아동학대 사례의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전문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중심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례관리의 효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사례관리의 개념

1. 사례관리의 개념

사례관리란 다양한 문제와 함께 사회적 기능수행의 어려움을 겪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기능 향상과 복지를 위해 그들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

로 전달하는데 목적을 둔 일련의 문제해결과정으로서 통합적 사회복지실천 과정을 구체화시킨 모델로서 개념화될 수 있다. Moxley(1989)에 의하면, 사례관리란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기능의 회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과 활동의 망(network)을 조직, 조정,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생태 체계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사례관리자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개인·가족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과 자원 제공자들의 기능을 향상시켜, 개인·가족이 그들의 환경 속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스스로 획득하여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권진숙, 2003).

보다 구체적으로 사례관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사례관리는 사례관리자와 개인 클라이언트와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기초로 클라이언트 중심의 개별화된 접근을 하는 특징이 있다. 두번째 사례관리의 특징으로는,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위한 개별지도 중심의 직접적 개입으로부터 자원의 조정을 포함하는 환경적 개입까지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특징은 지역사회 보호를 강조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이라는 것이다. 네번째, 사례관리는 치료(cure)보다는 보호(care)의 개념으로서, 만성적이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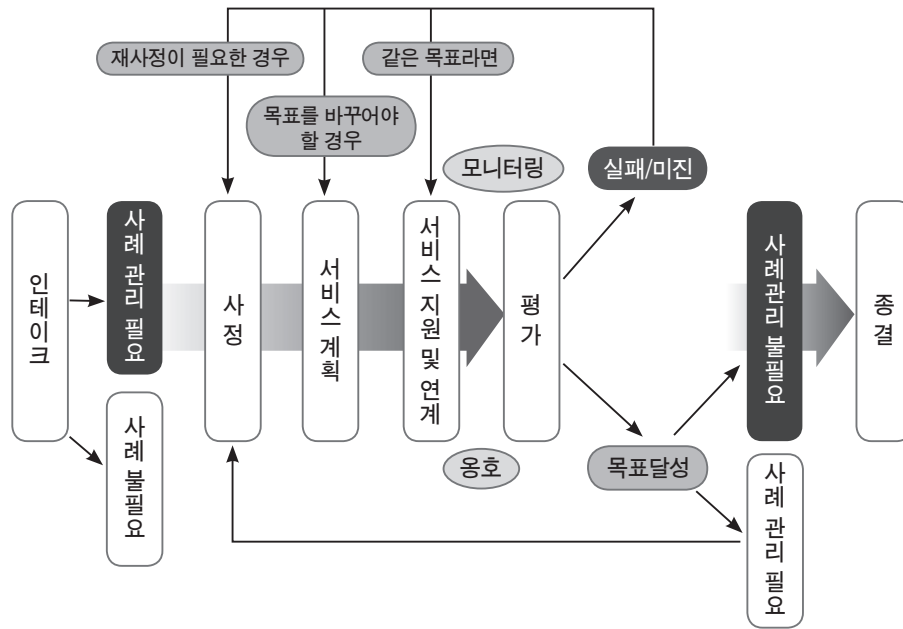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사례관리의 개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일반적인 특징과 다르게 적용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학대피해아동의 치료와 보호에 초점을 두며, 지속적으로 학대피해아동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는 현재 자원의 조정을 포함하는 환경적 개입보다는 학대피해아동의 치료와 보호,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등 직접적 개입에 더 많은 관심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사례관리에 있어서 사례관리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에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서는 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사례관리의 과정

1) 일반적인 사례관리 과정

사례관리의 과정은 사례관리의 제공자가 일정한 목적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절차이다. 사례관리 과정의 분류는 이론가나 실천가들이 어떤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가 혹은 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사례관리의 과정에 대한 입장은 학자들마다 매우 상이하다. Moxley(1989)는 사례관리의 과정을 사정→계획→개입→점검→평가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Ballew & Mink(1996)는 개입→사정→계획→자원에 접근→조정→종결 6단계로 구분하였다. Woodside·McClam(2006)는 사정→기획→실행의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권진숙·박지영(2008)은 사례관리의 과정을 초기과정→사정과정→개입계획→조정과 점검→평가와 분리 5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각 학자들이 구분한 사례관리의 각 과정은 보다 세

분화된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Woodside · McClam의 사정 단계에는 초기 접촉과 정보수집의 단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획단계에는 목표수립과 서비스 설계의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실행단계에는 서비스 제공과 모니터링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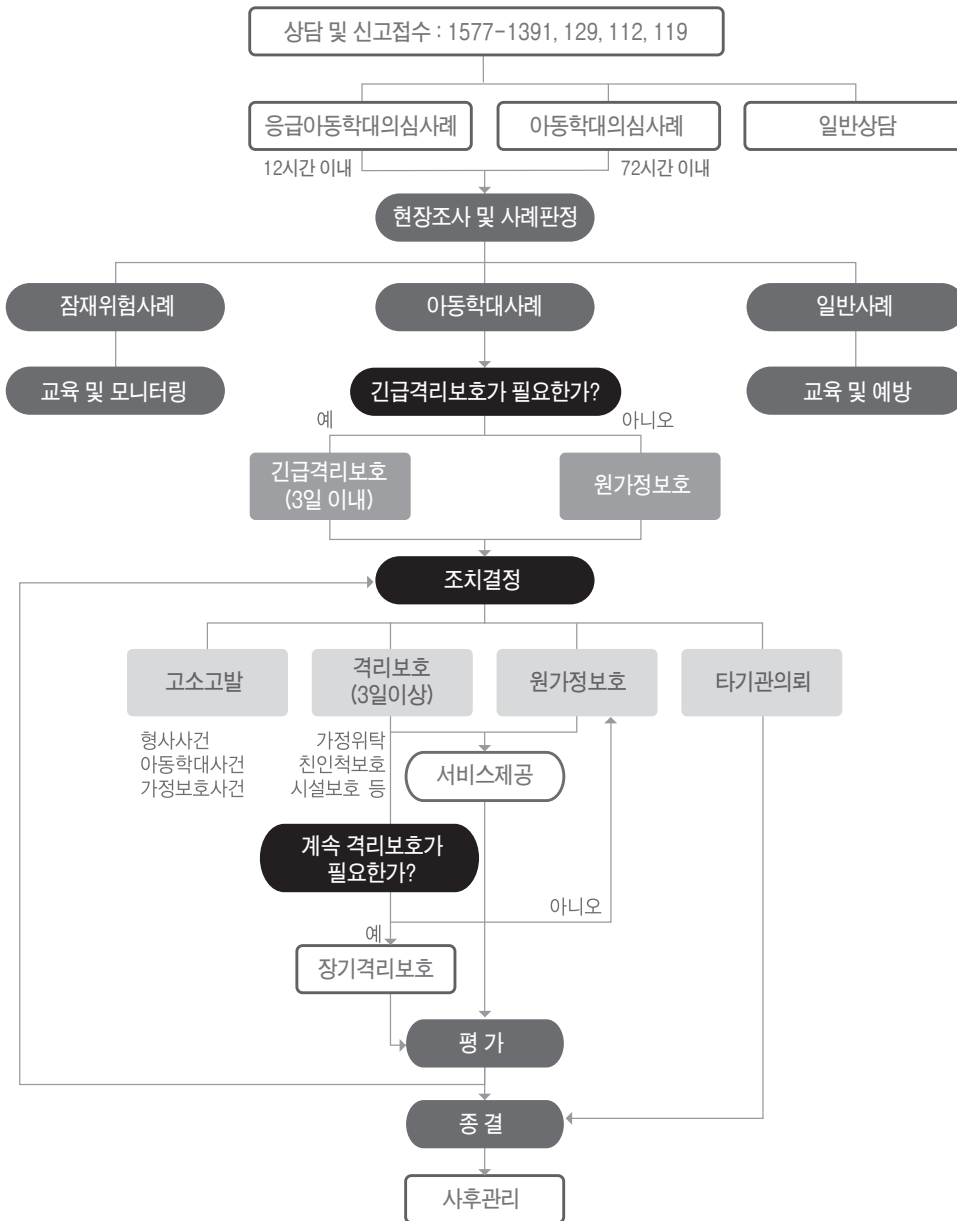


〈그림 1〉 사례관리의 과정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과정은 일반적인 사례관리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아동학대라는 법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 지침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례관리 전 과정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에 기록한다는 점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제시된 사례관리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2>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상담 및 신고접수 단계이며, 둘째 단계는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이다. 사례판정 결과에 따라 사례에 대한 개입방안이 결정되는데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는 경우 긴급격리보호의 결정과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서비스의 제공, 학대행위자 치료서비스, 부모 및 가족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진다. 서비스가 일정기간 진행된 후 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종결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그림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절차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피해아동관련 사례관리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관리 현황을 매년 발간되는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례관리 중요과정의 실적을 분석하였다.

1) 연도별 신고 현황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개설하고, 아동학대 신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상담신고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2001년에는 4,133건의 사례가 신고 되었으며, 2002년 4,111건, 2003년 4,983건, 2004년 6,998건, 2005년 8,000건, 2006년 8,903건, 2007년 9,478건, 2008년 9,570건, 2009년 9,309건으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1년에 비해 2009년 신고 건수는 2.3배 증가한 실적이다.

<표 1> 연도별 아동학대관련 상담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구분	신고 실적	아동학대 의심사례	일반상담 사례	전년대비 증가율
2001년	4,133	2,606 (63.1)	1,527 (36.9)	-
2002년	4,111	2,946 (71.7)	1,165 (28.3)	-0.5
2003년	4,983	3,536 (71.0)	1,447 (29.0)	21.2
2004년	6,998	4,880 (69.7)	2,118 (30.3)	40.4
2005년	8,000	5,761 (72.0)	2,239 (28.0)	14.3
2006년	8,903	6,452 (72.5)	2,451 (27.5)	11.3
2007년	9,478	7,083 (74.7)	2,395 (25.3)	6.5
2008년	9,570	7,219 (75.4)	2,351 (24.6)	1.0
2009년	9,309	7,354 (79.0)	1,854 (19.9)	-2.7

*자료 : 각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활용하여 제작성.

한편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신고 실적은 2006년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391'의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폐지되고 보건복지 통합 콜센터 '129'로 통합되어 신고방법이 변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

한편 매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상담 중 아동학대의심사례 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에 63.1%를 기록하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2009년 79%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녀양육과 관련된 일반상담 사례는 2001년 36.9%에서 2009년 19.9%로 감소하였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증가하여 아동학대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상담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현장조사 실적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고 접수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등을 만나고 학대 및 응급성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사실에 대한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파악해야 하므로 1회의 현장조사만으로 판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여러 번에 걸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분류된 사례에 대해 어느정도 현장조사를 실시했는가를 분석한 결과 2002년 131%, 2003년 149%, 2004년 141%, 2005년 146%, 2006년과 2007년 147%, 2008년 138%, 2009년 152%로 나타나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약 1.3회에서 1.5회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조사 실적은 매년 일정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상담원이 업무량 특성에 따라 상담원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현장조사 사례가 한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 2〉 연도별 아동학대의심사례 대비 현장조사 비율

(단위 : 건, %)

구분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실적	의심사례대비 현장조사 비율
2001년	2,606	미파악	-
2002년	2,946	3,846	130.5
2003년	3,536	5,250	148.5
2004년	4,880	6,873	140.8
2005년	5,791	8,409	146.0
2006년	6,452	9,508	147.4
2007년	7,083	10,375	146.5
2008년	7,219	9,992	138.4
2009년	7,354	11,208	152.4

*자료 : 각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활용하여 재작성.

3) 유형별 학대피해아동 보호 실적

200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로 보호받은 실적을 학대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여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매년 방임과 중복학대 사례가 동일하게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방임의 경우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30% 이상을 차지하여 왔으며, 급기야 2008년에는 40%에 해당되어 방임에 대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중복학대의 경우 2001년에 29.6%를 기록하였으며, 2003년 39.5%로 최고를 기록하다가 2008년에 34%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 다시 39.4%로 증가하였다. 매년 학대아동의 1/3정도가 중복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들 사례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3〉 연도별 아동학대 유형

(단위 : 건, %)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	계
2001년	476 (22.6)	114 (5.4)	86 (4.1)	672 (31.9)	134 (6.4)	623 (29.6)	2,105
2002년	254 (10.3)	184 (7.4)	65 (2.6)	814 (32.8)	212 (8.6)	949 (38.3)	2,478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	계
2003년	347 (11.9)	207 (7.1)	134 (4.6)	965 (33.0)	113 (3.9)	1,155 (39.5)	2,921
2004년	364 (9.4)	350 (9.0)	177 (4.5)	1,367 (35.3)	125 (3.2)	1,508 (38.8)	3,891
2005년	423 (9.1)	512 (11.1)	206 (4.4)	1,635 (35.3)	147 (3.2)	1,710 (36.9)	4,633
2006년	439 (8.4)	604 (11.6)	249 (4.8)	2,035 (39.1)	76 (1.5)	1,799 (34.6)	5,202
2007년	473 (8.5)	589 (10.6)	266 (4.8)	2,107 (37.7)	59 (1.0)	2,087 (37.4)	5,581
2008년	422 (7.6)	683 (12.2)	284 (5.1)	2,237 (40.1)	57 (1.0)	1,895 (34.0)	5,578
2009년	338 (5.9)	778 (13.7)	274 (4.8)	2,025 (35.6)	32 (0.6)	2,238 (39.4)	5,685

*자료 : 각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활용하여 제작성.

4) 치료서비스 제공 실적

치료서비스는 아동학대가 발생된 이후에 제공되는 전문적인 서비스로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원 연결 등의 서비스와, 가족 및 부모관련 서비스, 학대행위자를 위한 치료서비스, 기타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년 제공된 치료서비스 제공 실적을 살펴보면 2001년 총 57,813회의 치료서비스가 제공되었고, 2002년에는 39,126회, 2003년 49,266회로 2001년보다 감소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 91,264회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5년 160,045회, 2006년 203,272회, 2007년 251,320회, 2008년 347,170회, 2009년 375,469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실적은 2001년 대비 649% 증가한 것이다.

먼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서비스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아동학대사례 각각에 대하여 학대유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각 서비스 대상의 욕구를 파악한 후 상담 및 치료, 교육, 경제적인 지원, 지역사회와의 이용 가능한 자원 연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피해아동에 대한 제공 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 27,949회를 기록하였고, 2003년 33,142회, 2003년 46,755회, 2005년 90,314회, 2006년 111,763회, 2007년 143,328회, 2008년 207,111회, 2009년 288,303회를 기록하여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9년에 제공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서비스는 2002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피해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높은 증가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와 상담원들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노력 등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표 4〉 연도별 치료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 회)

구분	치료서비스 총 제공 실적	피해아동 치료서비스	가족 및 부모 관련 서비스	학대행위자 치료서비스	기타대상 서비스
2001년	57,813	-	-	-	-
2002년	39,126	27,949	3,427	7,268	482
2003년	49,266	33,142	5,884	9,596	644
2004년	91,264	46,755	15,001	14,201	15,307
2005년	160,045	90,314	23,477	18,276	27,978

구분	치료서비스 총 제공 실적	피해아동 치료서비스	가족 및 부모 관련 서비스	학대행위자 치료서비스	기타대상 서비스
2006년	203,272	111,763	25,091	27,625	38,793
2007년	251,320	143,328	26,603	34,287	47,102
2008년	347,170	207,111	38,256	43,057	58,746
2009년	375,469	288,303	37,398	49,758	미집계

*자료 : 각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활용하여 제작성.

가족 및 부모관련 서비스는 학대행위자를 제외한 부모와 기타가족들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서비스 제공 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에 3,427회가 제공되었고, 2003년에 5,884회, 2004년에 15,001회, 2005년 23,477회, 2005년 25,091회, 2007년 26,603회, 2008년 38,256회, 2009년 37,398회가 제공되었다. 2004년과 2008년에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4년에 서비스 제공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소규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에 따라 가족 및 부모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2008년 증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체적으로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증가한 결과이다. 2009년 서비스 제공 실적은 2002년에 비해 991% 증가한 것으로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서비스는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각종 상담 및 치료, 교육, 경제적 지원, 자원연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 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 7,268회가 제공되었으며, 2003년 9,596회, 2004년 14,201회, 2005년 18,276회, 2006년 27,625회, 2007년 34,287회, 2008년 43,057회, 2009년 49,758회가 제공되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9년 서비스 제공은 2002년에 비해 585% 증가한 것이다.

기타 서비스는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 이외의 관련 친인척이나 보호를 제공하는 시설보호자 등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제공 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에 482회가 제공되었으며, 2003년 644회, 2004년 15,307회, 2005년 27,978회, 2006년 38,793회, 2007년 47,102회, 2008년 58,746회가 제공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 실적은 2002년에 비해 12,088% 증가한 것으로서 치료 및 보호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보호를 제공하는 기관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업무량 분석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수는 2009년 12월 현재 기관장을 포함하여 총 317명으로 파악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전체 업무량을 상담원 수로 나누어 1인당 평균 업무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9).

2009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1인당 29.4건의 상담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응급 아동학대의심사례 건수를 포함한 아동학대의심사례 23.2건을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정하고, 35.4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7.9건을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

는 아동학대사례 판정 건수는 2009년 당해 연도에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정한 사례 수만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2009년 이전에 접수되어 종결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리하고 있는 누적사례 19,597건을 포함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실제적으로 2009년 한 해 동안 관리한 아동학대사례는 1인당 79.8건이 된다. 상담원 1인이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사례판정, 조치결정, 서비스제공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담원 1인이 한 해 평균 79.8건의 사례를 관리하는 일은 매우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한 2009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이 피해아동을 원가정보호조치한 경우는 12.6건, 격리보호조치는 5.2건으로 조사되었고,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고소·고발조치를 취한 경우는 0.9건으로 파악되었다.

서비스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원 1인당 서비스 대상자에게 총 1,253.6회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상별로는 피해아동에게 909.5회, 학대행위자에게 157.0회, 부모 및 가족에게 118.0회, 아동학대 외 사례에 69.2회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은 평균 2,016명에게 약 40회의 아동학대에방교육을 실시하여 한 달에 168명에게 약 3회의 교육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쇄물·언론·인터넷·캠페인 등을 통해 6,675.3회의 홍보활동을 펼친 것을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1인당 업무실적을 살펴보면 업무부담이 매우 과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상담원들이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체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및 홍보사업까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례관리와 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한 모든 과정을 1인 상담원이 책임지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체계는 아동학대사례개입의 질적 저하를 불러 올 수 있으며, 학대아동보호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6) 기타 관련지표 분석

상담원들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아동학대의 주요 특성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먼저 재신고 사례 비율을 살펴보면 2007년 이후 매년 900건 이상으로 2006년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둘째, 피해아동의 원가정 보호 비율을 살펴보면 매년 7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 발생사례의 대부분이 원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부모임을 고려한다면 원가정보호의 비율이 높을수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이 아동에 대한 더 적극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학대피해아동보호에 있어서 원가정보복귀의 원칙이 맞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상담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셋째, 학대행위자 지속관찰의 비율 또한 80%대로서 상담원들이 피해아동의 보호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상담원이 경찰과 검찰, 법원에 까지 출두해서 조사에 동행하거나, 학대행위자에게 각종 위협을 당하는 등 업무과중과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표 5〉 최근 4년간 학대관련 주요 항목 변화 추이

(단위 : 건, %)

구분	재신고 사례	원가정보호 비율	학대행위자 지속관찰비율	고소고발비율
2006년	684 (7.7)	3,621 (69.6)	-	322 (6.8)
2007년	957 (10.1)	4,061 (72.7)	4,306 (77.2)	285 (5.1)
2008년	930 (9.7)	3,936 (70.6)	4,369 (78.3)	237 (4.3)
2009년	1,134 (12.2)	4,008 (70.5)	4,765 (83.8)	289 (5.1)

*자료 : 각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활용하여 제작성.

넷째, 상담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항목 중의 하나가 장기관리사례이다. 2009년 상담원들이 제공한 학대아동관련 서비스 중 장기관리사례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먼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중 2009년 이전 신고사례에 대한 서비스 비율은 52.3%로 절반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결된 이후 사후관리사례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비율은 14.9%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에 있어서도 2009년 이전에 신고사례에 대한 서비스 비율은 46.7%로 절반정도에 달하였고, 사후관리 사례에 대한 서비스 제공비율도 13.7%로 분석되었다.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있어서도 2009년 이전 신고사례의 비율이 45.3%이며, 사후관리 사례 비율은 15.1%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담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절반정도가 2009년 이전에 발생한 사례에 제공되는 것이며, 서비스의 15%정도는 종결된 사례의 사후관리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담원들이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사례의 비율을 감소시켜도 상담원들의 사례관리 업무 부담은 어느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사례관리에 있어 장기관리사례의 비율

(단위 : 건, %)

구분	총계	2009년 이전 신고사례	2009년 신고사례	진행중 사례	사후관리 사례
학대피해아동 서비스 제공	288,303	150,689 (52.3)	137,614 (47.7)	245,316 (85.1)	42,987 (14.9)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49,758	23,250 (46.7)	26,508 (53.3)	42,931 (86.3)	6,827 (13.7)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대상 서비스	37,398	16,952 (45.3)	20,446 (54.7)	31,731 (84.9)	5,667 (15.1)

*자료 : 각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활용하여 제작성.

III.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의 적절성 및 전문성 평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사례관리의 적절성과 전문성을 2003년과 2009년에 이루어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¹⁾

1. 신고접수 - 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일반상담으로의 분류의 적절성

아동학대의심사례란 ‘아동학대의 증후 및 후유증이 발견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의미하며, 일반상담이란 ‘아동학대와는 관계없이 시설입소, 이혼으로 인한 양육권 분쟁, 아동양육 및 정서행동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아동상담’을 의미한다.

2003년 평가결과 신고접수 후 아동학대 의심사례와 일반상담으로 적절하게 분류한 사례가 80% 이상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1개로 약 64.7%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80%미만의 사례만을 적절히 분류한 기관도 6개로 35.3%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2009년 평가에서는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의 적절성 비율은 9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학대아동보호사업이 도입된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사례판정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현장조사 및 초기조치

1) 현장조사

아동학대로 의심된 사례는 모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아동학대사례로 의심될 경우 48시간 이내, 응급아동학대사례로 의심될 경우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3년 평가결과 비교적 다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해 규정된 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규정된 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80%미만인 기관도 3개가 있었는데, 이는 신고접수 건수가 많은 기관의 경우 사례가 폭주해 규정된 시간 안에 미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 파악된다.

2009년 평가결과 의심사례의 현장조사 비율은 98%, 현장조사의 규정시간 준수비율은 94%로 나타났다. 즉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의 경우 거의 대부분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조사 시간의 경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규정된 시간내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균 현장조사 건수 대비 2인 동행 현장조사 건수 비율은

1) 본 논고에서 사용한 2009년 평가결과는 서울과 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전국 4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결과서를 연구자가 자체분석한 것이므로 실제 평가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 향후 인용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 조직체계의 기관운영 성격상 특이성을 가진 직영기관인 2곳(서울, 부산)과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관현황파악 형태의 별도평가가 실시되었으며,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9년 하반기(9월)에 개소하였으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91.2%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례에서 2인 이상의 상담원이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평가에 비해 2009년 현장조사와 관련된 규정준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초기에 비해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크게 확대되어 담당지역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2) 초기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현장조사 시 피해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부합하는 조치로는 피해아동, 부모, 이웃, 기타 정보제공자 등과의 면접으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정을 실시하는 것, 아동학대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하여 아동의 안전여부를 점검하는 것, 아동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 아동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상조치 및 응급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 등이 있다.

2003년 평가결과 비교적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원들은 피해아동에게 취하는 초기조치에 대하여 심적 부담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방문평가를 통해 파악되었다. 이는 피해아동에게 취하는 초기조치가 아동의 격리 또는 원가정 보호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평가에서는 초기조치의 적절성을 4가지 항목으로 평가하였는데 첫째, “피해아동의 정보가 적절히 파악조사되었는가” 항목에 있어서는 41개소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적절하게 파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파악”의 경우 4개소를 제외한 37개소에서 적절한 정보가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비가해 부모 및 기타관련 인물에 대한 정보파악조사”에 있어서는 40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스크리닝 척도의 활용 여부에 있어서는 1개소를 제외한 40개소의 기관에서 척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종적으로 현장조사시 피해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부합되는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의 비율은 93.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피해아동 보호의 초기조치에 있어서는 매우 적절하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일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행위자에 정보파악이 미흡하여 초기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3. 사례판정 및 서비스 계획

1) 사례판정의 적절성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현장조사 후 사례회의를 거쳐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중 한가지로 판명되며, 사례를 판정하는 기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2003년 평가에서는 업무수행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80%이상의 사례에 대해 적절하게 사례판정을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4개로 비교적 많은 센터가 사례판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으나 아동학대로 판정하기에 모호한 일부 사례의 경우 판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방문평가를 통해 확인되었다.

학대여부를 판정하는 업무자체가 매우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므로 잦은 이직으로 인해 신규 인력이 많이 발생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신규 상담원을 대상으로 사례판정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중간관리자가 체계적인 슈퍼비전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판정하기에 모호한 사례를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서로 공유함으로써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작업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수행지침을 통해 더욱더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2) 서비스 계획의 수립여부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모두 서비스 계획을 세워야 하며, 서비스 계획을 세우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아동과 가족의 욕구, 피해아동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활용 가능한 자원, 학대유발 요인 및 위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등이 있다.

2003년 평가결과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 모든 사례에 대해 각각 서비스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일부 사례에 대해서만 서비스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학대아동보호사업의 도입 초기로 인해 상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례개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평가에서는 서비스 계획의 수립여부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사례관리 종결 영역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서비스 개입계획에 따른 종결을 평가하는 항목을 도입하여 평가하였다.

3) 사례회의 및 사례판정위원회 활동

사례회의 및 사례판정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영역의 경우 2003년에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9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내부 사례회의를 주2회 이상 실시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41개소 중 36개소로 조사되었다. 내부 사례회의를 주1회 실시하는 곳은 5개소로 나타나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 1~2회의 내부 사례회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례판정위원회의 연간 운영횟수를 살펴보면 평균 2.3회로 반기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원구성도 업무지침에 따라 각 분야별 위원으로 고르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례판정위원회의 경우 상담원이 다루기 어려운 사례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나 반기 1회만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나 반기 1회 정도로 개최시기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서비스 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비가해 부모 및 가족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03년 평가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행위자보다는 피해아동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에 비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가 헛수나 다양성 면에서 매우 미비한데,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많은 부분 가족상황에서의 원인제공이 많은 반면, 서비스는 주로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차후 재학대를 방지한다거나, 가족상황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지원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2009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비가해 부모 및 가족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제공은 매우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의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초기에 비해 6.5배 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제공 실적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2003년 평가에서는 80%이상의 사례에 대해 가정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10개(58.8%), 70%이상~80%미만의 사례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3개(17.6%), 60%이상~70%미만의 사례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2개(11.8%), 60%미만의 사례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2개(11.8%)나 나타나는 등 가정복귀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2009년 평가에서는 거의 모든 기관에서 가정복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

1) 사례종결

사례를 종결할 시기가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상담원 및 슈퍼바이저, 필요할 경우 타 기관의 서비스 제공자 및 사례관정위원이 함께 한 가운데 종결에 관한 회의를 실시하여 종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03년 평가결과 이러한 사례종결절차에 따라 종결되는 사례가 80%이상인 센터가 12개(70.6%), 70%이상~80%미만인 센터가 4개(23.5%), 60%이상~70%미만인 센터가 1개(5.9%)로 나타났다. 2009년 평가에서는 종결과 관련하여 5가지 항목을 평가하였다. 먼저 사례개입과정에서 수립한 목표달성정도를 파악하였는가를 조사한 결과 2개소를 제외한 39개소의 기관에서 목표달성정도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족 등의 욕구 등을 파악하였는가에 대한 항목에서는 8개소를 제외한 33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욕구평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학대재발의 위험정도나 학대유발요인의 감소정도를 파악(위험사정척도 사용)하는



가에 대한 항목에서는 2개소를 제외한 39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험사정척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종결을 위한 사례회의의 실시여부에 있어서는 41개소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종결과 관련된 사례회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종합적으로 사례종결 절차에 따른 종결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93.3%로 나타나 거의 모든 사례들이 절차에 따라 종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2003년 평가와 비교할 때 매우 개선된 것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문서보관 실태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전 과정에서 습득한 학대사진, 비디오 테이프, 녹음 테이프 등의 자료가 잘 보관되고 있는가를 평가한 결과 2003년에는 소수의 센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센터에서 비교적 잘 보관되어 있었다.

2009년 평가에서는 문서비치 및 기록여부에 있어서 41개 기관 모두 규정된 9종의 문서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일반문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례증거자료를 기록 및 보관하고 있다는 응답은 78.4%로 나타나 20% 정도의 사례의 경우 증거자료 등 보관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례개입의 전 과정에서 수집되는 각종 자료의 보관 및 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3) 사후관리 : 6개월간 매월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여부

2003년 평가결과 종결된 사례의 사후관리 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종결된 사례에 대한 사후관리는 최소1개월에 1회 이상 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원 1인당 담당하는 사례 수나 아동과 아동보호전문기관간의 지역적 거리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평가에서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한 비율은 71.4%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후관리비율은 상담원의 업무부담을 고려한다면 매우 높은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례관리 실태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황보고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잘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003년 평가에 비해 사례관리 수준이 매우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담당해야 할 사례가 너무 과다하여 한 사례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례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의 확충이다. 2009년 아동청소년사업안내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배치 기준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13명, 시·군·구아동보호전문기관은 9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배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하고 44개 기관에 317명이 배치되어 평균 7명에 불과하였다. 상담원 7명에 행정요원 1명을 추가하면 평균 8명이 근무하고 있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배치 기준 9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담원 인력 기준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급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치료와 예방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또한 우리나라 상담원의 학대피해아동 관리 사례 수는 미국의 3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업무가 과중하며²⁾,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다른 직종에 비해 이직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업무과중과 높은 이직률은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성을 하락시키며, 지역사회 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상담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상담원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즉 상담원 1인이 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동 수를 정하고 이에 맞추어 상담원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상담원의 역할을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학대아동보호와 관련된 전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 상담원의 역할을 신고접수, 현장조사, 치료서비스 제공, 교육 및 홍보 서비스 등 전문적인 역할로 나누어 담당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재단의 예산지원 하에 예방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학대아동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즉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상담원들이 더 이상 교육이나 홍보 등의 업무에 신경쓰지 않고 맡겨진 학대아동 사례관리에만 전념하고 있다.³⁾ 이러한 역할분담은 상담원의 소진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방안이 된다.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지침 작성에 있어서 사례종결과정과 사후관리 기간 등 사례관리 관련 업무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9년에 발생한 학대아동에 대한 서비스 실적과 2009년 이전에 발생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비율이 거의 유사하며,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2009년 발생한 사례에 대한 서비스 제공실적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의 50% 정도가 2009년 이전에 발생한 사례이며, 상담원들이 학대가 발생한 지 1년 이상된 사례를

2) 미국의 경우 상담원의 업무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인력, 서비스 제공 인력이 구별되어 있는 주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을 다시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상담원의 업무량은 미국의 3배 이상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면담결과를 제시함

40% 정도 관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이러한 장기간 사례관리는 상담원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며, 사례 개입의 효과성을 낮추고, 상담원의 소진을 불러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간 사례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6개월 이상된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판정위원회나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사례종결을 하거나 타기관으로 의뢰하여 상담원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외부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일상적인 사례관리만 담당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아동학대의 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기존사례를 가중시켜 상담원의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담원의 확충없이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사례관리의 효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소진 감소 및 직무만족도 향상 대책 수립이다. 오승환·변귀연(2009)의 연구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소진 상태를 살펴보면, Maslach가 제시한 기준점에 따라 나누어 볼 때, 정서적 탈진의 정도가 심한 상담원이 88.5%, 성취감의 감소 점수가 심한 상담원 85.7%, 클라이언트 비인격화 정도가 심한 상담원 71.4%로 나타나, 이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소진이 매우 심각한 정도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상담원의 소진을 감소시키고 소진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특히 상담원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설치와 상담원의 추가확대 배치 등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이며, 상담원의 신분보장 및 아동보호서비스 제도의 운영방법 개선, 전문치료 인력의 보강, 학대행위자 수감명령제 도입, 사법체계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내적 측면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 대한 슈퍼비전을 강화해야 한다. 상담원들의 경우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상담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상담원들의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슈퍼비전이 필요하다. 상담원에 대한 슈퍼비전을 통해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지지적 슈퍼비전을 통해 상담원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및 소진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개인적 성취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직의 효능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관리자의 전문성 제고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슈퍼비전의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장과 팀장 등 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슈퍼바이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들 관리자들의 학대아동보호와 관련된 업무 전문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자격규정만으로는 이러한 전문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사자 채용규정에서 업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력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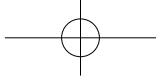
일곱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관을 활용한 사례관리 서비스의 제공이다. 학대아동보호사업은 대



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기관에 의해 전달되기보다는 다양한 관련기관들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될 때 보다 효과적이다. 학대아동보호사업은 예방, 신고접수, 조사, 보호 더 나아가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만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실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지역사회연계기관으로부터 학대신고, 학대조사, 아동상담 치료, 정보교환, 서비스 의뢰, 예방교육, 홍보, 정기모임·회의, 연구모임 등의 다양한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계활동은 학대신고와 정보교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동상담 치료나 서비스 의뢰 등의 사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오승환, 2009). 상담원들의 사례관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원들은 이러한 지역사회 기관들의 서비스를 조정하는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공계순 (2004).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소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 공계순 (2005).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 19호.
- 권진숙 역(2004). 『사례관리: 개념과 기술』, Authur J. Frankel & Sheldon R. Gelman (2004). Case Management. 서울: 학지사.
- 권진숙·박지영(2008). 『사례관리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김만두 역(1993).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한 케어 매니지먼트 실천론』, David P. Moxley. (1989) The Practice of Case management. 서울: 홍익제.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안내』, 각년도.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3).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평가결과보고서』.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4). 『선진각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각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 양옥경 외(2001). 사회복지실천론. 나남.
- 오승환 (200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복지 서비스 현황".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포럼 자료집.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 오승환·변귀연 (2009).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의 직무만족도 결정요인". 아동과 권리, 제13권 제2호, pp. 247-274.
- 오승환 (2009). 한국의 학대아동보호정책, 나눔의 집.
- 윤혜미 (2004).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외국 법 현황".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포럼 자료집.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 조윤영 (2005). "한국아동학대예방사업의 현황과 프로그램". 제1회 한국·대만·일본 사회복지 교환 세미나 자료집. 한국복지재단.
- American Public Human Services Assn. (1999). *Guidelines for a Model System of Protective Services for Abused & Neglecte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Washington, D.C; Author.
- Bellow, J. & Mink, G. (1996). *Case Management in Social Work*. The Charles C. Thomas Publisher, Ltd.
- Woodside, M. & Clam, T. (2006). *Generalist Case Management: A Method of Human Service Delivery (3rd ed.)*. United States: Thomson Brooks/Cole.



사례 ①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유관기관 통합지원으로 위기에서 회복된 가정

• 기관명 :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본 사례는 친모의 정신적 문제(망상)로 인한 심각한 방임 사례이다. 친모는 아동과 함께 가정(교회)에서 생활하였으며, 친모가 유기견을 수시로 가정으로 데려와 집안에서 개 24마리, 고양이 6마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가정에는 각종 쓰레기와 동물의 배설물 및 분비물로 온통 뒤범벅되어 매우 비위생적이고 악취가 심하여 도저히 사람이 생활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이에 본 기관은 관할지구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및 지역경제과, 관할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정신보건센터, 유기견보호소, 119응급구조센터, 관할보건소, 라이온스클럽, 정신과병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통합지원을 실시하여 위기관리 및 가족기능회복을 도모하였다.

I. 사례개요

아동성명	김여진(아동1, 가명) 김은진(아동2, 가명)	아동 성별 및 연령	여, 16세 여, 14세
학대행위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김경순(친모, 가명)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여, 45세
학대유형 (중복응답)	<input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II. 신고접수

▶ 신고접수일 : 2009년 5월 21일

가정에서 썩는 냄새가 나고 쓰레기와 오물이 바닥에 널려있는 상황이라고 함. 또한 집안에서 개와 고양이가 여러 마리가 함께 지내고 있으며, 공공요금을 장기간 미납하여 단전·단수되었고 밤에는 촛불을 켜놓고 생활하여 화재의 위험도 크다고 함.

III. 현장조사

▶ 현장조사일 : 2009년 5월 21일

1) 가정환경 확인

본 기관과 함께 관할지구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정신보건센터가 응급현장조사를 실시함. 친모와 아동들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가정환경을 확인한 결과, 악취가 매우 심하고 각종 쓰레기와 동물들의 배설물과 분비물로 온통 뒤범벅이 되어 아동들이 거주할 수 없는 환경임을 확인함.

2) 아동상담 실시

같은 날 오후, 하교한 아동과 상담을 실시함. 당시 아동1은 가정에서 도저히 거주하기 어려워 친구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상태였으며, 아동2는 가정이 매우 불결하여 장롱 속에서 취침한다고 함. 아동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하기를 적극 희망함.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위험하고 심각한 아동학대로 판단되어,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응급조치의무 등) 2항에 의거 아동을 일시보호 조치함.

3) 친모상담 실시

같은 날 저녁, 친모와 상담을 실시함. 친모에게 현재 상황이 심각한 아동학대임을 설명하였으나 이해하지 못하였고, 아동을 무작정 데려가겠다고 난동을 피워 관할지구대에서 출동함. 친모에게 가정을 깨끗하게 치울 것을 요청하였고, 각 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을 원가정복귀 시키겠다고 설명함. 이에 친모는 주말까지 청소를 완료하겠다고 약속 후 돌아갔지만 친모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4) 아동 격리보호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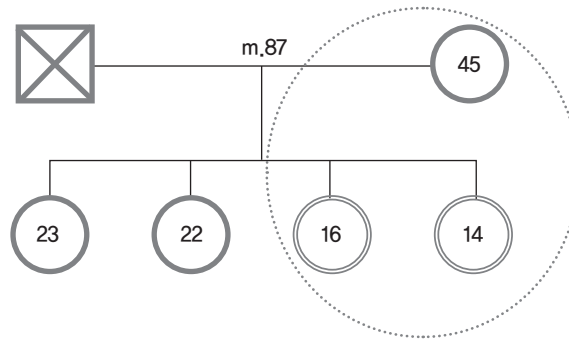
아동은 친모가 거주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본 기관에서도 비위생적이고 위험요소가 높은 원가정에서 아동이 생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아동복지법 제10조(보호조치)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응급조치의무 등) 3항에 의거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3일 이상의 격리보호 승인 조치함.



▲현장조사 당시 모습

IV. 사정

	성명	성별	연령	관계	동거여부	직업/학교	비 고
가족사항 (아동포함)	김경순	여	45	친모	동거	목사	
	김지영	여	23	큰언니	비동거	회사원	
	김은영	여	22	둘째언니	비동거	백화점근무	
	김여진	여	16	아동1	동거	중3	
	김은진	여	14	아동2	동거	중1	



1. 강점사정

▪ 피해아동

- ① 아동 1,2는 학업능력이 비교적 우수하고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강점임.
- ② 현재 가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

▪ 학대행위자

친부 사망 후에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에서도 아동들을 양육하려는 의지가 강하여 아동에 대한 애착이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친모가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함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 부모 및 가족

친모의 언니는 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는 것과 수원에 거주하고 있어 친모와의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것이 강점임. 따라서 친모의 치료와 유기견 포획과 같은 제반사항에 대한 동의 등 사례 진행에 협력 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기타

- ① 친모가 생활하는 교회의 상가 주인은 친모의 이사에 도움을 줄 의욕을 가진 강점이 있어 조속한 문제해결에 긍정적 요인임.

- ②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본 가정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지역 내 여러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음.

2. 위험사정

▪ 피해아동

아동2는 약간의 도벽과 위생문제 등의 위험요인이 있음.

▪ 학대행위자

- ① 정신적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며 위생적이지 못한 가정환경 위험요인이 매우 높아 유기견 포획과 방역을 포함한 가정환경 개선이 시급함.
- ② 양육기술(양육능력)이 부족하여 아동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음.
- ③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아동에 대하여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음. 또한 관련기관의 서비스를 받기 거부함.

▪ 부모 및 가족

- ① 가족원이 아동 이모(친모의 언니)를 제외하고 이웃, 친척, 친구 등과의 교류가 없고 사회적 지망이 부족함.
- ②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이 가족원에게 있었음(남편 사별, 큰딸의 임신 중절 수술 등).
- ③ 가구경제가 불안정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 현재 거주하는 상가 내 교회는 보증금 1,000만원/월세55만원이며 월세 미납금이 1,400만원임.
- ④ 가족원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함.

3. 욕구사정

▪ 피해아동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과 예전처럼 즐거운 일이 많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주 욕구임.

▪ 학대행위자

본인이 아동을 다시 양육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음.

▪ 부모 및 가족

친모의 치료와 양육기술 개선을 통한 가족기능 회복이 주육구임.

V. 개입

1. 개입목표

목 적 : 깨끗한 가정환경 안에서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을 통한 아동의 올바른 성장		
대상	단기목표	장기목표
아동 1, 2	· 불결한 가정환경으로 부터의 안전한 보호 · 학대후유증 발견 및 확인	·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
친모	· 친모의 정신건강 회복 및 생계 보조	· 친모의 정신건강 유지 및 경제적 지원 · 아동양육기술 향상 및 지지
가정환경	· 유기견 포획 · 가정집기류 폐기처분 · 이사준비	· 청결한 가정환경 유지
친인척	· 친모 입원치료 동의 · 제반사항 동의 서류 작성	· 친모의 깨끗한 가정환경 유지 및 치료의지 지지

2. 개입계획

대 상	단기계획	장기계획
아동 1, 2	· 그룹홈에서 보호, 양육 서비스 지원 · 목욕서비스 및 의식주 제공 · 학습, 정서프로그램(문화체험 등) 지원	·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치료실에서 심리 치료 실시 · 아동과 지속적인 정서적지지 및 상담
친모	· 정신보건센터 및 119응급구조센터와 연계하여 친모의 입원치료 · 관할 주민센터에 요청하여 수급권 지정	· 퇴원 후 지속적인 정신과 통원치료 · 아동지킴이를 활용한 정기적인 가정방문 사례 관리 · 본 기관 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 등을 통한 친모의 양육기술 제공 및 지지
가정환경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및 지역경제과와 연계하여 유기견보호소와 함께 유기견 포획 및 살처분 · 관할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가정 내 모든 집기류, 생활쓰레기, 오물 10ton 폐기처분, 비용은 상가 주인에게 협조 요청(2.5ton 트럭 5대 - 250만원) · 보건소 연계하여 건물내 방역 및 소독처리 · 상가 주인에게 연체된 월세비용(1,400만원) 협조 요청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급권자 임대주택 지원 요청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한 임대 주택으로 이사 · 후원자를 연계하여 집기류 구입 금액 지원 (1,000만원) · 친인척과 함께 이사 실시
친인척	· 친모 입원치료 설득 및 동의서 작성 · 친모의 가정 유기견 처리 동의서 작성 · 이사관련 각종 서류 대리 작성	· 친모의 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실시

3. 개입과정

1) 초기단계

① 관련 기관부서 서비스연계 회의 개최



- 일 시 : 2009. 5. 21(목) 14:00
- 장 소 : 관할 주민센터 소회의실
- 참석자 : 시청 서비스연계팀, 정신보건센터, 관할 주민센터, 경기도아동전문기관 상담원
- 내 용 : 개입방안 논의
 - »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그룹홈에 아동 긴급 입소 조치함.
 - » 주거지원 방안과 친모의 정신질환 검진방안을 협의함.

② 초기 친모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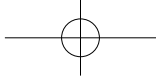


- 일 시 : 2009. 5. 25(월) 11:00
- 장 소 :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실
- 대 상 : 친모, 정신보건센터 직원 2명, 관할 주민생활지원팀장
- 내 용 : 아동입소 및 보호, 향후 계획관련 상담
 - » 친모는 배우자와 사별 후 혼자 아동을 13년간 키워왔고 아동에 대한 애착이 강하였지만, 구체적인 양육 대안은 미흡함.
 - » 불안정한 가구경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호소함.
 - » 친모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함.

③ 가족면담 및 동의서 작성



- 일 시 : 2009. 5. 27(수) 10:00
- 장 소 : 관할 주민센터 상담실
- 참석자 : 친모, 관할주민센터 팀장, 아동 이모,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내 용 :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친인척 상담
 - »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친모의 회복이 꼭 필요함을 설명함.
 - » 친인척(이모)이 친모에게 지지하고 설득하여 친모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함.



2) 중기단계

① 친모 입원조치



- 일 시 : 2009. 5.27(수) 11:00
- 장 소 : 공원, 정신과병원
- 참석자 : 119응급구조센터, 정신보건센터, 관할주민센터, 가족,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 내 용 : 유기견과 함께 공원을 배회 중인 친모를 발견하여 구조대 응급 출동



» 정신보건센터, 119응급구조센터 직원 등이 공원에서 친모를 만나 구급차로 이동 후 아동 이모, 외조모의 설득과 동의로 입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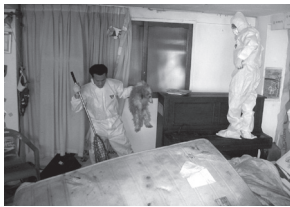


» 구급차 이송 비용 및 3개월 동안 친모의 병원치료비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지원하기로 함.
» 친모는 건강회복을 위해 입원해야 하는 상황을 수용함.

② 유기동물 포획 및 처리



- 일 시 : 2009. 5. 29(금) 10:00
- 장 소 : 친모 거주지
- 참석자 : 유기견보호소본부장, 시, 구, 동, 관련부서, 직원(미화원)
- 내 용 : 유기동물 28마리 포획 살 처분
- » 개22마리, 고양이 6마리



3 건물청소



- 일 시 : 2009. 6. 2(화) 10:00
- 장 소 : 친모 거주지
- 동원장비 : 인부-10명, 차량-5대(2.5ton트럭 x 5대)
- 내 용 : 쓰레기 발생량 10ton처리
 - » 수거료 250만원(건물주부담)
 - » 개2마리 추가 포획(유기견보호소) 처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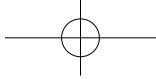
4 후원자 간담회



- 일 시 : 2009. 6. 22(월) 11:00
- 장 소 : 관할 주민센터 동장실
- 참석자 : 동장, 팀장, 라이온스클럽회장 3명
- 내 용 : 주거지원 협의
 - » 라이온스클럽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기로 함.
 - » 기타 회원모임에서 추가지원 방안을 검토함.
 - » 자녀와 세대주 면담추진을 협의함.

5 친모 면회

- 일 시 : 2009. 6. 23(화) 11:00
- 장 소 : 정신과 병원
- 참석자 : 친모, 주민센터팀장, 병원장,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내 용 : 친모상태 확인, 안부, 격려
 - » 친모는 향후 일정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함.
 - » 심리안정은 유지되고 있으나 증상거부현상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⑥ 아동 및 친모가정에 대한 세부후원 방안논의



- 일 시 : 2009. 7. 9(화) 15:00
- 장 소 : 관할 주민센터 소회의실
- 참석자 : 동장, 라이온스클럽 회장 외 3명, 아동1,2, 경기도아동 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내 용 : 아동에게 후원금 지원
 - » 7월부터 각 아동에게 월 5만원씩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 » 월1회 아동과 문화체험(야외활동)을 진행하기로 함.
 - » 아동1은 클럽 회원 중 영어전공자가 개인학습지도를 지원하기로 협의함.
 - » 아동2는 드림교육, 수학학원 수강지원과 관련하여 추후 협의하기로 함.
 - » 향후 전세지원금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함.

⑦ 친모 거주지 건물방역



- 일 시 : 2009. 7. 10(금) 11:00
- 장 소 : 친모 거주지 건물
- 참석자 : 차량-1대, 동원인력-3명
- 내 용 : 분무소독 실시(주변연막소독)
 - » 빈 건물에 대한 주1회 방역지원을 실시하기로 함.



⑧ 친모 면회 및 주치의 상담

- 일 시 : 2009. 7. 20(월), 30(목) 11:00
- 장 소 : 정신과 병원
- 대 상 : 친모, 아동, 병원장, 관할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장
- 내 용 :
 - 친모상태 - 향후 1~2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 » 정신분열증이 의심되며 감정변화가 심하고 불안한 현상이 상존하고 있음.



- » 병식부정(자신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부정) 현상이 있음.
- 퇴원시기 - 주거가 마련되고 친모가 통원치료만으로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점에 결정하기로 함(주치의와 사전 협의).
- 기 타 - 이후 아동과 아동 이모가 면회를 실시함.
- » 친모는 아동을 보고 눈물을 흘림. 아동은 의연하게 친모를 걱정해주고 치료를 잘 받으라고 함. 친모 또한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해진 후 함께 살자고 함.
- » 아동은 친모를 많이 지지하고 격려하였으나 내적인 심리적 어려움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9) 아동 및 관계자 상담



- 일 시 : 2009. 8. 12(수) 16:30
- 장 소 :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 대 상 : 아동1,2, 관할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장
- 내 용 :
 - 아동상황 확인
 - » 정서적 안정이 회복되고 있으며 심리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집단 음악치료 실시 예정임.
 - 후원자 결연상황 확인
 - » 아동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입원중인 친모의 동의와 확인필요
 - ※ 법인인감증명, 위임장, 사용인감계, 기관지정서 요청하여 처리
 - 가정회복 및 친모 퇴원까지 그룹홈에서 보호 예정임.

10) 정신보건센터 상담 및 연계(보호연장 지원방안논의)

- 일 시 : 2009. 8. 21(금) 14:00
- 장 소 : 정신보건센터
- 대 상 : 담당간호사 외 1명
- 내 용 :
 - 친모의 입원치료비 논의
 - » 09. 8. 27이후 병원비를(월15만원) 아동 이모가 부담하기로 함.
 - 퇴원 후 사후관리를 연계함.
 - » 가정방문(주 1회), 여가지원(월 1회), 후원물품, 반찬서비스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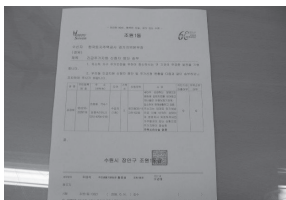
11 아동 집단음악치료 시작

- 일 시 : 2009. 9. 2(수)
 - 장 소 :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 대 상 : 아동1,2
 - 내 용 : 집단음악치료 시작
- » 아동 총 4명과 함께 매주 수요일 실시
- » 아동1은 자신의 꿈을 “세계일주-특히 이집트 가보기/초등학교선생님과 사회복지사/미국이나 일본에서 1년 이상 살아보기/교환학생 되어보기/가족들과 한집에서 살기/가족들과 놀이공원 가보기/비행기 타보기/한과목이라도 백점 맞아보기/반1등이나 전교1등 되어보기/외국어 능통하게 2가지 이상 해보기”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꿈이 비록 이루기 힘들지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을 자신에게 편지를 쓰듯 격려하는 말로 적은 모습을 보임.
- » 아동1은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에너지가 있음을 심리치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아동의 긍정적 에너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함. “지금은 외롭더라도 곧 친구가 생길꺼야, 기다려보거나 니가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보는 건 어떨까” (편지내용)
- » 아동2는 초기에는 의사표현이 소극적이었고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었으나(“나는 악기를 잘 못하는데...”) 치료과정을 통해 아동의 적극성과 자신감을 이끌 수 있도록 함. 아동2는 약간의 도벽이 있었으나 그룹홈 생활과 심리치료를 통해 문제행동은 수정되어짐.

12 친모상태 확인 및 퇴원시기 조정을 위한 병원방문

- 일 시 : 2009. 9. 29(화) 11:00
 - 장 소 : 정신과 병원
 - 대 상 : 친모, 병원장
 - 내 용 : 환자 퇴원합의
- » 09. 10월 중 퇴원 후 일정기간 통원치료를 하기로 함.
- » 10월 중 주거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에 연계 및 의뢰하기로 함.

13 한국토지주택공사 긴급주거지원 신청 요청



- 일 시 : 2009. 10. 14(수)
- 주 관 : 관할 주민센터
- 담당자 : 사회복지 8급 공무원
- 내 용 : 긴급주거지원 신청 요청

» 담당공무원에게 긴급주거지원을 요청, 이후 동에서 주택공사와 사전협의(물량확보) 후 공문발송을 실시함.

14 친모 병원외출 후 임차계약 체결



- 일 시 : 2009. 10. 15(목) 11:00
- 장 소 : 관할 주민센터 민원실
- 참석자 : 친모, 아동 이모, 담당공무원,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내 용 : 임차계약을 위해 병원 외출
 - » 친모가 임차계약을 위해 외출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민원실)함.
 - » 친모는 정신건강이 크게 호전되었고 아동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함.
 - » 친모는 관련기관의 서비스에도 크게 만족하고 고마움을 표현하였고 적대적 감정은 사라짐.

15 새살림 마련을 위한 후원자 미팅



- 일 시 : 2009. 10. 18(일) 13:00
- 장 소 : 관할 주민센터 상담실
- 참석자 : 관할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장, 라이온스클럽회장,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내 용 : 개인후원금 1,000만원 지원결정
 - » 퇴원 후 살림도구 등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기로 약속함.
 - »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현물기탁) 처리하기로 함.
 - » 가족과 가재도구 등 필요집기 견적계산 후 구입하기로 함.

16 아동 개별상담 및 서비스 제공

- 일 시 : 2009. 10. 19(월)
- 장 소 :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 대 상 : 아동1, 2
- 내 용 :
 - 아동 개별상담
 - » 아동1은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을 희망하고 기대함. 이를 위해 적극



적으로 노력하고 수용하는 모습이 강함.

- » 한편 아동1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음. 아동1은 학업성적이 비교적 우수하였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나, 현재 가정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고 있었음.
- » 아동1은 친모면회와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결국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이는 자신의 희망에 대하여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으로 나타남. 아동1에 대한 충분한 지지와 격려를 통해 자신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서비스 제공

- » 병원치료(피부과 치료, 건강검진, 척추교정, 충치치료, 결막염, 감기진료), 영화감상, 음식만들기, 야외체육활동, 집단놀이지도, 댄스 및 요리지도, 제6회 푸른색 공모전 참여, 성교육, 드럼지도, 심리적성검사(학습능력검사, 직업적성검사, 성격유형검사), 여름캠프, 피아노, 집단원예지도, 풍물지도, 학습지도 등
- » 아동1은 영어공부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영어과외(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실시하였으며, 아동2는 수학능력이 부족하여 웅진썸크빅 개별지도를 실시함.

17 가재도구 구입을 위한 견적산출 및 이사에정지 사전방문



- 일 시 : 2009. 10. 21(수) 20:00
- 장 소 : 관할 주민센터 상담실, 이사에정지
- 참석자 : 아동 이모,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내 용 :
 - 임차계약체결 : 09. 10. 16 (11평)
 - » 보증금 170만원 / 월34,600원 (2년)
 - 가전제품 및 집기류 견적산출
 - » 냉장고, 가스렌지, 컴퓨터 등 1,000만원 상당 구입논의함.

18 친모 퇴원 및 아동 가정복귀

- 일 시 : 2009. 10. 23(금) 13:00
- 장 소 : 아동의 이모 집
- 참석자 : 아동, 이모, 친모,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내 용 :
 - » 친모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크게 호전되어 퇴원함. 정기적인 통원치료를 할 계획이며 아



동을 잘 양육하겠다고 함.

- » 아동과 친모는 새로운 환경에서 함께 거주하게 된 것에 매우 기대하였고 관련 기관의 도움에도 크게 고마움을 표현함.
- » 아동은 한편 수급비를 친모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자신이 이를 관리하고 싶다고 함. 과거에도 친모가 양육을 회피하고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함. 아동과 친모의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가족치료나 의사소통 기술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함.

3) 말기단계

① 새살림 구입



- 일 시 : 2009. 10. 24(토) 10:00
- 구입방법 : 후원자 카드결제
- 내 용 :
 - 가전제품, 컴퓨터, 주방제품 등 76종(7,641,000원)
 - 가구, 침대 등 6종(1,934,000원)



② 임대주택 입주



- 일 시 : 2009. 10. 24(수) 10:00
- 장 소 : 빌라
- 입주자 : 친모, 아동1,2
- 내 용 : 방2, 거실, 화장실
 - » 아동과 친모가 입주하였고 짐정리를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함.



3) 후원자 가정방문 간담회



- 일 시 : 2009. 11. 25(수) 12:00
- 장 소 : 아동 가정
- 참석자 : 동장, 자치위원장, 팀장, 담당자, 후원자 2명,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 내 용 : 이사지 격려, 아동장학금 50만원 전달 및 오찬

VI. 사례종결

1. 피해아동

아동들은 새 거주지의 깨끗한 환경에서 잘 지내고 있으며 본 기관에서 집단음악치료에 참여하고 있음. 청결한 환경 제공으로 인해 위험요소가 크게 감소하였고 개입목표인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도 이룸. 또한 아동들은 보호자에 대한 역할 기대감에 친모가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 아동들과 친모와의 갈등상황이 호전되었음.

2. 학대행위자

행위자인 친모는 입원치료를 통해 회복 후 현재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하고 있음. 정신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수급비 및 후원금으로 아동들을 잘 양육하고 있음. 가정환경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음. 친모의 입원치료와 수급권 지정, 아동지킴이를 통한 모니터링 등 목표를 달성함. 끝으로 친모는 올바르게 아동들을 양육하려는 의지가 많고 양육기술 습득에 대한 욕구도 커진 상황임. 과거에는 아동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아동들과 친모간에 그 동안 있었던 서로의 어려움과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대처해 나가려는 모습도 커짐.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큰 기대와 의지보다는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으로 발전됨.

3. 부모 및 가정환경

친모의 회복으로 인해 올바른 양육방법으로 청결한 가정환경을 유지하고 있음.

4. 기타 상황

친인척이 지속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관할동 주민센터, 후원자의 도움으로 방임의 위험요인이 크게 감소함.

5. 위험사정척도 결과

▣ 아동요인 : 0점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없으며, 문제행동이나 심리적 부적응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음. 학교생활과 대인관계 적응도 잘하고 있으며 청결상태도 유지되고 있음.

▣ 생활환경요인 : 0점

지역사회에 학대 위험성이 없으며 모니터링 자원이 많음. 아동양육에 필요한 사회, 경제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주거환경에서 아동의 안전에 반하는 위험이 없음.

▣ 보호요인 : 0점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할 능력과 의욕이 있으며 아동 근처에 항상 있을 수 있는 여건임.

▣ 보호자요인 : 4점

보호자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는 통원치료를 통해 약 복용을 하며 지속적으로 질병을 다스리고 있어 아동 양육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음. 또한 양육기술이 부족하여 아동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지만 아동의 안전 및 성장에 위험요소가 되지는 않음.

▣ 행위자요인 : 3점

아동모는 통원치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질병치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신질환이 남아있음.

▣ 가족요인 :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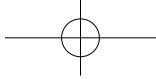
주부양자(친모)의 정기적인 급여가 없고 불안정한 취업으로 인하여 가정경제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의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음.

6. 상담원 소견

- ①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양육환경 개선, 그룹홈 보호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한 아동의 심리안정 도모, 정신과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통하여 친모의 정신건강이 크게 호전됨.
- ② 친모가 아동 양육 의지가 높고 변화된 양육태도로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보호하고 있는 것이 관찰됨에 따라 사례회의를 통하여 사례를 종결하기로 결정함. 종결 후 일정기간 재학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VII. 사후관리

친모와 아동이 가정복귀한 이후 본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모니터링 중이며, 관찰동 주민센터와 정신보건센터와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또한 친모가 통원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가능한 상태인지 관찰하고 있음.



아동 이모를 통해서도 친모의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① 친모, 아동, 친인척 내방



- 일 시 : 2010. 1. 5(화) 14:00
- 장 소 :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 대 상 : 아동1, 친모, 아동 이모
- 내 용 : 모니터링 및 상담
 - » 아동이 그룹홈에서 생활하면서 창작시 공모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장과 상금(30만원)을 수여 받음.

② 가정방문 모니터링



- 일 시 : 2010. 2. 12(금) 18:00
- 장 소 : 아동 가정
- 대 상 : 아동1, 2
- 내 용 : 아동상담 및 거주 상황확인
 - » 깨끗한 환경에서 적절한 양육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음.

③ 친모 전화상담

- 일 시 : 2010. 3. 8(월) 14:00
- 장 소 :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 대 상 : 친모
- 내 용 : 가정 모니터링 및 행위자치료프로그램 참석여부
 - » 통원치료(약물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며 외조모의 건강악화로 인해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행위자치료프로그램에 참석이 어렵고 하반기 때 꼭 참석하기로 약속함.

④ 친모 방문상담

- 일 시 : 2010. 4. 20(화), 5. 28(금), 6. 30(수) 14:00
- 장 소 : 아동 가정
- 대 상 : 친모
- 내 용 : 아동 양육관련 지식 및 정보 제공, 부모교육 및 상담
 - » 월 1회, 총 3회에 걸쳐 가정에 방문하여 재학대 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훈육방법, 스트레스 관리 방법, 올바른 양육방법, 양육지식 및 기술 습득교육 등을 실시함.

- » 친모의 양육방법 개선으로 원가정에서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도모함.
- » 친모의 깨끗한 가정환경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자녀양육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지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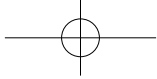
5 가정방문 모니터링



- 일 시 : 2010. 7. 14(수), 15:00
- 장 소 : 아동 가정
- 대 상 : 친모
- 내 용 : 거주 상황확인
 - » 정기적인 통원치료와 약물을 복용중
 - » 집안 정리 상태도 양호하였고 쌀 10kg 1포대를 지원함.
 - » 정기적으로 라이온스클럽에서 후원금을 받고 있음.
 - »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를 위한 친모의 긍정적 모습을 지지함.

VIII. 심사위원 평가 종합의견

- 학대행위자 및 가족원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장·단기 계획에 따라 피해아동 및 가족 기능회복을 위한 개입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족보존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우수사례임.
- 현장조사를 통해 주거 및 양육환경과 상담조사 내용이 충실히 기록되었고 학대행위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사정과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개입목표와 사정에 따른 장·단기 계획이 가족의 강점 및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세부적으로 제시됨으로써 체계적인 개입을 가능케 함.
- 학대행위자의 정신과 질환에 대해 가족의 지지와 본인의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 낸 후 입원조치함으로써 퇴원 후 갈등 소지를 없애고 치료효과를 높였으며, 아동에 대한 그룹홈 입소조치와 심리치료 및 학습지원으로 학교적응에 문제가 없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진로지도 및 상담을 통해 목표의식을 갖도록 함.
- 학대행위자 입원기간 동안 행정기관, 후원자단체, 친족자원을 연계하여 주거생활 공간의 마련, 생활비 및 경제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퇴원과 함께 가족재통합을 실현하고 가족보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었음.



사례 2

토끼가 구한 아이

• 기관명 : 경북안동아동보호전문기관

안동 성당에서 관리하는 텃밭의 토마토, 당근, 오이 등이 자주 없어졌다. 토끼가 와서 먹는 것이 목격되자 “한 번 더 토끼를 풀어놓으면 토끼를 잡아먹겠음”이라고 경고문을 붙였다. 어느 날 토끼 대신 한 아동이 방울토마토를 따먹는 것이 목격되었다. ‘아이가 배고파서 먹었구나!’ 하는 생각과 측은한 마음에 아동을 따라 가보니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동 모는 하루 종일 집밖으로 모습을 내보이지 않았다. 3평 정도의 방안에는 쓰레기가 가득하였으며 아동과 아동 모, 강아지 2마리, 토끼 1마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소위 말하는 ‘쓰레기 집’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동은 신체에 배여 있는 악취로 같은 반 아동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수개월 전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아동 가정의 상황을 목격한 분이 본 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본 기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아동 모의 정신질환과 아동에 대한 방임이 심각하여 아동 모에 의한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하였다. 이에 아동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친·인척들과 10년 전 이혼한 친부에게 연락을 취하여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정신과 전문의의 협조로 아동 모의 입원치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동 모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으며 아동은 일시보호쉼터에 입소 조치를 취하였다.

아동의 모는 남편의 성실하지 못한 생활과 외도에 대한 실망으로 이혼을 하였다. 부모의 이혼 후 아동 모에 의하여 양육되어 온 아동은 아동 모의 영향으로 ‘남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강한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례개입 초기에는 남자상담원에 대한 경계가 심하였으며 아동 부를 만나는 것도 거부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상담과 관계개선을 위한 아동 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아동과 아동 부의 관계가 호전되었으며 아동은 쉼터에서 퇴소를 하여 아동의 부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아동 모는 자립을 위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재봉과 한복 만드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아동의 부와 함께 아동을 공동양육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신고 당시 지능이 낮고, 일상생활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측정되었던 아동은 가정환경이 개선되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능력도 향상되었다. 학업성적도 두드러지게 향상되었으며 교내·외의 각종 상도 수상하였다. 또한, 학급의 부반장도 역임하였다.

현재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명문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아동 모는 이혼 당시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호전되어 아동 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모는 직무능력도 향상되어 향후 1~2년 내 독립된 가게를 운영할 희망도 키우고 있다.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 모에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고 있기에 아동의 가정에 밝은 미래가 비춰지고 있다.

I. 사례개요

아동성명	김소정(가명)	아동 성별 및 연령	여, 9세
학대행위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이연주(친모, 가명)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여, 42세
학대유형 (중복응답)	<input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II. 신고접수

▶ 신고접수일 : 2006년 3월 28일

아동 모는 정신병이 의심되며 자존심이 강해 외부인의 가정방문을 싫어하고 외출도 하지 않는 것 같음. 아동 모는 아동 생후 2개월쯤 이혼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모름.

아동은 11세 여자이며, 아동모와 단둘이서 생활하고 있음. 아동은 학교를 다니지 않음. 아동이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로부터 맞거나 놀림을 당하고 아프다는 핑계로 아동 모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 같음.

가정환경은 사글세에 방 1칸에 아동과 아동 모, 강아지 2마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가정 내에는 강아지의 배설물과 쓰레기들로 발 딛을 틈도 없이 지저분함. 신고자에 의하면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다.’ 라고 표현함.

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월 28만원 정도의 수급비로 생활한다고 함. 정부에서 지원되는 쌀로 밥은 먹고 있으나 반찬이나 집안 청소, 빨래 등 일상생활이 거의 이뤄지지 않음.

성당의 수녀가 가정지원을 위하여 처음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는 아동 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나 신고 당시에는 호의적인 태도로 바뀌었다고 함.

반찬이나 집 청소 등의 일회성 지원보다는 아동의 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아동 모의 정신과 치료를 원함. 또한, 아동의 시설입소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함.

III. 현장조사

- 1) 일시 : 2006년 3월 30일 09:30 ~ 12:00
- 2) 장소 : 아동 관할 지역 동사무소, 아동가정
- 3) 조사자 : 상담원 1, 상담원 2

- » 피조사자 : 아동, 아동 모
- » 동행조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 조사방법 : 방문면접조사

5) 조사내용 :

- ▶ 아동 관할 지역 동사무소 방문
- » 아동에 관한 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호적등본) 발급.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한 아동가정에 대한 정보파악 및 가정 방문 동행요청.

▶ 아동 가정 방문

(1) 가정환경

- » 아동과 아동 모는 3평 정도의 공간에서 개 2마리, 토끼 1마리와 생활하고 있었음. 부엌과 방이 2개 있으나 부엌과 방 1개는 사용하지 않고, 1개의 방만 사용하고 있었음. 사용하지 않는 방에는 군데군데 개의 배설물이 있었고, 방안에 놓여 진 그릇에는 부패된 밥과 물이 섞여 있었음. 식기에는 찌든 때가 묻어 있었고, 아동은 그릇에 담긴 물을 자신이 마신 후 개에게도 먹였음. 방안의 창문 유리는 깨져있었고 아동 모는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어 놓고 산다고 함.

(2) 학대상황

- » 아동과 아동 모의 옷에는 찌든 때가 심하게 묻어 있었고 방안은 장기간 청소를 하지 않아 지저분하고 더러웠으며 악취가 심하였음.
- » 아동은 초등학교 3학년 겨울 방학 전 오른쪽 눈이 돌아가면서 의식을 잃은 적이 있어 건강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함. 아동이 학교를 다녀오면 입술이 하얗게 말라서 병원진단을 받은 결과 탈수 증상으로 진단받았다고 함. 아동의 모는 아동이 학교에 가면 불안하여 학교를 보낼 수 없다고 함.

(3) 아동의 가정상황

- » 아동 모는 아동의 부와 연애결혼을 한 후 1년 2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함. 아동 부의 외도로 친가와 갈등이 있었다고 함. 아동의 친가 사람들 중에 ‘갈잡은 사람이 갈잡은 말’ 을 하여 속상해서 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함.

(4) 아동 모의 특성(아동 모의 진술로 정신질환을 확인할 수 있었음.)

- » 아동의 모는 아동 조부의 임종으로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아동 삼촌이 자신의 가슴을 밀쳐 그 당시 받은 통증으로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7년 정도 먹었다고 함.
- » 아동 모는 9년 동안 아동을 업고 키워 허리에 통증이 심하였는데 아동 모가 잠자는 동안 아동의



집에서 기르던 개가 아동 모의 허리를 핥아서 통증이 사라졌으며 개가 자신의 허리를 핥을 때는 아주 환상적이었다고 함.

» 아동의 모는 방바닥이나 사용하지 않는 방에서 성관계를 하는 신음소리가 들린다고 함.

6) 초기조치

» 아동 모에 의한 방임(교육적 방임, 물리적 방임)으로 판정하고 아동모와 아동에게 아래의 조치를 취함.

» 아동 모-지속관찰(아동 모의 정신과치료를 위해서는 가족구성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가족구성원 조사에 시간이 요함.)

» 아동-원가정보호(아동 강제분리 이전에 아동 모의 정신과치료 및 입원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원가정 보호한 상태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구성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현장조사 및 사례개입 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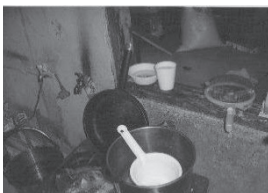
▷방 안(安) - 작고 지저분한 방에서 아동과 아동 모, 강아지 두 마리, 토끼 한마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음.



▷부엌 - 취사도구, 음식물, 여러 물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음.



▷세면장 -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곰팡이가 피어 있으며 온갖 도구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음.



▷방 입구 - 먹다 남은 음식물과 설거지가 되지 않았음.



▷방안과 세면장의 모습



▷청소를 하던 날 -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청소를 하는 장면. 트럭 2대분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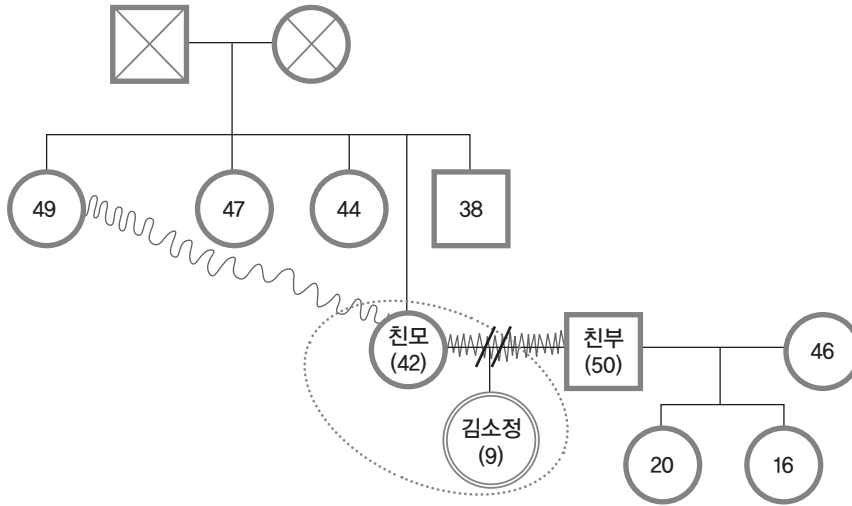
▷아동 모의 병원 입원 후 기관으로 오기위해 차에 탄 김소정 아동이 강아지를 안고 있는 모습.



▷아동이 아동 모와 분리 후 개인 소지품을 가지러 원가정방문을 하던 날 아동의 모습.
아동은 “집에서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얼른 밖으로 나와 버렸음.

IV. 사정

	성명	성별	연령	관계	동거여부	직업/학교	비고
가족사항 (아동포함)	김철수 (가명)	남	50세	친부(이혼)	비동거	초대졸	초등교사
	이연주 (가명)	여	42세	친모	동거	고졸	99년 이혼
	김소정 (가명)	여	9세	아동	동거	초등학교 재학	



1. 강점사정

1) 아동

표현은 서툴지만 최소한의 상황 설명은 가능함. 아동 모에 대한 애정 있고, 동물을 좋아함.

2) 친모

아동에 대한 애정이 있고, 책임감이 있음. 상담원에게 솔직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임.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는 없음.

3) 친부

초등학교 교사이며, 딸의 문제해결을 위한 본 기관의 개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함.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과 아동에 대한 양육 의지도 있음.

4) 외삼촌(첫째)

아동 모에 대한 동정심이 있음. 경제적 능력이 있음. 위협심이 강함. 안동에 거주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음. 아동의 외가(外家)에서 영향력이 있고 본 기관의 개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함.

5) 이모(둘째)

아동 모에 대한 동정심이 많고, 안부전화를 자주하며, 경제적 지원도 가끔 함. 아동에 대한 양육 의지도 있으나 아동의 모가 무서워서 아동양육의사를 표현 못 한다고 함. 아동 가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있음.

2. 위험사정

1) 아동

가정 밖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남자에 대한 거부감이 많음. 학습능력과 세면, 청소 등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함. 따돌림 당하는 것이 두려워 등교하기 싫어함.

2) 친모

정신질환이 심각함. 일상생활 및 자기관리능력이 부족함.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과 불신이 강하여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친·인척의 왕래가 전혀 없음.

3) 친부

여성편력이 심함. 말을 자주 바꾸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음. 최근에 방광암이 발견되어 치료 중에 있음.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며, 신용불량자임.

4) 외삼촌(첫째)

마약과 폭력전과가 있음. 아동 모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있음. 경제적 능력은 되나 불안정함. 정신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으며, 정신병원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동생의 입원에 회의적임.

5) 이모(둘째)

아동 모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가정에 피해가 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 개입을 꺼려함. 서울에 거주하므로 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3. 욕구사정

1) 아동

아동 모의 치료와 이모 집에서 토끼, 강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함.

2) 친모

경제적 지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집수리와 청소, 가구지원을 원함.



3) 친부

아동 가정의 경제적 지원과 아동 모의 치료를 원함. 지금 당장 아동을 양육하기는 어려우며 가끔이라도 아동과의 만남을 원함.

4) 외삼촌(첫째)

아동 모의 치료를 원한다고 함. 아동의 대리양육은 어려워 본 기관에서 해결해 주기를 원함.

5) 이모(둘째)

아동 모의 치료를 원함. 본 기관에서 아동 모를 설득하여 자신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거나 아동 모에게 비밀을 유지하여 준다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다고 함. 단, 시간이 필요하며 자신의 가정에 피해가 안 가도록 요청 함.

V. 개입

1. 개입목표

아동과 아동 모에 대한 적절한 개입으로 정신·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가족관계가 정상화되어 아동이 가정 내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아동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개입계획

1) 장기계획

- (1) 아동 모의 정상적이고 자립적인 생활 유도
- (2) 아동 모의 아동에 대한 양육능력 향상
- (3)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성장 도모
- (4) 가족들의 아동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확보
- (5) 지역사회 내 지지기반 구축

2) 단기계획

- (1) 아동 모에 대한 정신과 진단 및 정신병원 입원

- (2) 아동 모에 대한 부모교육 및 아동 성장과 관련 상담 지원
- (3)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심리검사 지원
- (4) 아동 모의 병원 치료 기간 동안 아동의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 (5) 아동과 아동 부와의 관계회복 및 부의 양육의지 강화
- (6) 가족들에게 아동과 아동 모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관심과 지원 요청
- (7)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집수리, 청소 등의 서비스 제공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3. 개입과정

1) 초기단계 (2006년 4월 ~ 6월)

(1) 2006.04.04, 04.06. 아동 및 아동 모와의 관계 형성

»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상황 점검. 아동 모의 과거력과 가족관계 파악, 연락처 확보, 아동의 상황 및 욕구 사정

(2) 2006.04.18. 가족관계 파악 및 연락

» 둘째 외삼촌(포항 거주), 둘째 이모(서울 거주), 첫째 이모(대구 거주)와 유선통화 실시. 가족들은 아동 가정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 이전에 수차례 아동 모의 입원 치료를 진행했으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지쳐 있는 상태임. 아동 모의 강제 입원에 대한 동의를 두려워하며, 입원을 하여도 정신질환이 치료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함. 아동 모의 강제입원 치료를 위한 가족 동의를 구하기 위해 아동 모가 입원하기까지 가족들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함.

(3) 2006.04.21. 아동 모의 입원 치료 절차에 대해서 관련 병원 담당자와 상담

» 안동 병원, 대구 병원 2곳, 부산 병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입원 절차에 관하여 상담.

(4) 2006.05.15. 아동 모의 입원 치료 동의를 위한 외삼촌 상담

» 아동 모의 정신병원 입원치료 동의를 받기 위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으나 자신이 마약복용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된 경험을 얘기하며, 아동 모의 강제 입원 조치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임. 본 기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입원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함.



(5) 2006.05.22. 아동 부의 소재 파악 및 상담

» 아동 부는 안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방광암 치료 중에 있었음. 초등학교 사택에서 살고 있다고 함.

(6) 2006.06.01. 아동 모의 입원 준비 및 입원조치, 아동의 시설입소

- » 아동의 외삼촌과 동행하여 병원 정신과과장을 면담 한 후 입원 준비.
- » 아동 모의 강제 입원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구대와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함.
- » 아동의 외삼촌과 상담원 2명,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구대 대원 2명이 협력하여 아동 모의 강제입원조치를 진행함.
- » 아동을 목욕시키고, 속옷과 옷, 신발을 사준으로 아동의 외모가 깔끔해짐. 아동에게 모의 병원입원에 대해 설명하였고 아동은 이해를 함.
- » 아동은 아동 부와 사는 것에 대해서 거부함. 아동 부를 설득하여 아동을 일시보호센터에 보호하기로 함.

(7) 2006.06.02. 아동의 신상과 등교일정관련 담임교사와 상담.

» 담임교사에게 아동의 아동시설입소에 관하여 설명하고, 추후 아동의 학교등교일정에 대해 논의함.

2) 중기단계 (2006년 7월 ~ 12월)

(1) 2006.07.12. 아동 모의 입원에 따른 가족들과 역할 논의

» 아동 모의 입원에 따라 아동 친인척보호가 가능한지 여부와 현 거주지 정리에 대해서 가족들과 논의함. 아동 외삼촌과 거주지정리 및 처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추후 아동의 거취에 대하여 논의함. 아동 이모의 아동 모의 입원기간동안의 간식비를 지원하며, 아동 외삼촌이 아동의 급식비와 방문학습지신청비용을 부담하기로 함. 아동 모의 수급비 통장은 기관에서 보관하기로 함.

(2) 2006.07.14. 아동의 가정환경 정화.

» 상담원 3명, 자원봉사자 5명이 동원되어 가정환경 정화를 실시함. 트럭 2대분의 쓰레기를 처리함.

(3) 2006.07.24. 아동과 함께 아동 모의 병문안 실시

» 아동과 함께 아동 모의 병문안 실시. 아동 모는 아동을 보고 반가워 끌어안고 아동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았으나 아동은 무표정한 반응으로 대답함.

(4) 2006.08.23, 08.28. 아동 가족 및 쉼터 담당자와 추후 아동거취에 대해 논의

- » 쉼터 담당자는 아동 부가 아동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확인 한 후 만약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태백에 있는 그룹홈으로 이동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함.
- » 아동 부는 쉼터를 방문해서 아동을 시설에 보낼 수는 없으며, 양육할 환경 마련을 위해 1달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요청함. 또한 본인이 아동을 양육할 환경이 되지 않으면 인근에 사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함.
- » 아동 이모는 아동이 일시보호쉼터에 머무르는 동안 아동의 옷과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편지도 보내고 싶다고 전함.

(5) 2006.11.11, 11.27. 아동 심리 검사관련 의사면담, 종합심리검사 실시

- » 학교수업시간에 상황에 맞지 않게 웃는 아동의 행동이 아동 모의 정신질환이 공유된 결과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소견이 걱정 되어 병원에서 아동의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함.

(6) 2006.11.23, 11.24, 11.28. 아동 모의 퇴원 조치 및 모니터링

- » 아동 모가 아동 외삼촌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퇴원을 중용하였고, 충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1회 통원치료로 검진과 약을 처방받는 조건으로 퇴원 조치 됨.
- » 퇴원 후 아동 모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7) 2006.12.19, 12.21. 거주지 이전 및 지역사회 가정제품 및 살림도구 지원

- » 인근 월세방으로 거주지를 이전함. 아동 모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적립 된 수급비로 월세를 지불함.
- » 새로운 거주지에 본 기관에서 세탁기, 가스렌지, 찬장 등을 지원함. 성당에서는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지원하고, 집안의 여러 가지 수리를 지원함.

(8) 2006.12.20. 아동 모의 취업 알선

- » 아동 모는 결혼 전에 봉제 일을 한 경험이 있기에 지역자활센터 봉제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선함.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아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임.
- » 아동 모는 봉제관련 책을 사서 공부하는 등 의욕을 보임.

(9) 2006.12.25, 12.27. 아동의 가정 복귀 관련 논의 및 아동 부의 가정으로 복귀

- » 쉼터 시설장과 아동의 가정복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재혼 한 아동부가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



는 의지도 있고, 아동도 아동 부를 좋아해서 아동 부의 가정으로 복귀하게 됨. 아동은 아동 부의 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있으며, 사촌과도 잘 지낸다고 함. 아동 부는 아동의 학업지원에 최선을 다함.

- (10) 2006.12.2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아동모의 퇴원 안내 및 경제적 지원 요청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아동모의 퇴원 및 주거지 이전, 또한 아동 모에 대한 기관 개입과정과 현재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고로 힘들어 하는 상황을 설명함.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가정방문을 통해 지원을 모색하고,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3) 말기단계 (2007년 1월 ~ 12월)

- (1) 2007.01.04. ~ 01.29. 아동 모의 자활사업 참여 승인
- » 아동 모의 정신질환으로 자활사업사업 참여가 어려웠지만, 본 기관과 지역자활센터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병원 등의 협조로 아동 모의 자활사업 참여가 승인 됨.
 - » 아동의 모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봉재업무를 하면서, 개인 창업을 위해 봉재공부도 병행하고 있는 등 아동에게 성실한 생활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
- (2) 2007.02.05, 02.10. 아동의 생활 모니터링 및 아동과 아동 모와의 만남 연결
- » 아동의 생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아동 모가 아동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뜻을 전함. 아동은 아동 모를 만나고 싶은데 당장 아동의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함.
 - » 아동이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아동 모에게 그 동안의 상황들을 설명함.
 - » 아동 모와 아동이 8개월 만에 만남. 모녀는 2주일에 1회씩 만나는 것으로 약속함.
 - » 그 후, 아동은 평일에는 아동 부의 가정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아동 모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아동 친부모는 아동의 보호자로서 공동책임의식을 가지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있음.
- (3) 2007.02 ~ 2007.12 아동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 파견 및 가정지원서비스 제공
- » 본 기관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아동 가정에 반찬서비스 등을 지원 함.

VI. 사례종결

1. 피해아동

- » 2006.12.27. 아동부가정으로 복귀이후, 아동이 학교생활을 지속하게 됨.
- » 학업 성적 향상과 또래 관계가 개선 됨.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명문대학을 목표로 학업에 매진하고 있음.
- » 아동 부와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매주 주말 조모 댁을 방문하고, 친척들과도 잦은 연락과 왕래를 하고 있음.

2. 학대행위자

- »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진료와 처방 받은 약 복용 중.
- »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봉재 분야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음. 개인 창업을 준비하고 있음. 퇴근 후에 봉재 교육 받고 있음.
- » 아동의 부는 아동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이 개선되었으며 아동 부의 경제적 도움에 고마워하고 있음. 일상생활 및 자기관리 능력이 향상됨.
- » 아동 모는 자신의 강제입원으로 본 기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본 기관에서 아동 모에게 가족관계 회복, 멘토 지원, 경제적, 정신적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 모의 본 기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어 본 기관의 개입에 대하여 신뢰적인 태도를 보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고 있음.

3. 부모 및 가정환경

- » 2006.12.26 거주지 이전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됨. 아동 모가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 2006.11~ 신앙생활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동료 신자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고 있음.
- » 2006.12~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아동은 자유롭게 친·인척들의 집에 왕래를 하고 있음. 친·인척들에 의하여 아동의 학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음.

4. 위험사정척도 결과

- » 2008년 1월 15일 사정 결과 : 총합 6점(아동 요인 0점, 보호자 요인 3점, 행위자 요인 0점, 가족 요인 3점, 생활환경 요인 0점, 보호 요인 0점)
- 보호자 요인 3점 : 아동이 친부와 계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아동의 모가 정신질환으로 통



원치료를 받고 있음.

- 가족 요인 3점 : 아동 부의 외도로 이혼한 것에 대한 아동모의 스트레스가 있으며, 모의 정신질 환으로 인하여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음.

5. 상담원 소견

아동의 모는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 지속적인 통원치료와 처방 약 복용으로 정신질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 하고 있음. 자활사업 참여로 직업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회생활을 통하여 삶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음. 자원봉사자와 멘토들이 아동의 모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 어머니의 정신과 치료와 안정적인 생활로 아동은 적절한 교육, 양육의 기회를 제공 받고 있음.

VII. 사후관리

(1) 2008.02.22, 03.19, 05.11, 06.19, 08.14. 아동 모와 아동의 생활 모니터링

- » 아동 모 : 지역자활센터에서 봉제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퇴근 후와 주말에도 연습을 하는 등 생활에 열심을 보임. 직장에서 아직은 어울리는 것이 부족하나 적응력이 향상되고 있음. 자신이 만든 옷을 상담원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함.
- » 아동 : 아동 모와 좋은 관계 속에 잘 지내고 있음. 학교생활에도 흥미가 생겼으며, 친구들과 잘 지냄.

(2) 2008.02.22, 03.19, 06.19. 멘토 자원을 통한 아동 모의 약물치료 모니터링 및 지원

- » 종교활동 참가로 인한 교우관계 형성, 신자들이 아동 가정에 소품 지원을 통한 생활지원. 멘토 자원을 통한 아동 모의 약물치료 모니터링 및 지원
- » 아동 모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성당 용품 제작 요청, 여러 단체의 정기적 방문으로 아동 모가 기관과 주위자원에 고마움을 표현함.

(3) 2008.08.14. 아동과 아동의 부 및 친·인척들과 관계가 개선되고 있으며 왕래가 활발해짐.

- » 아동은 방학 중 아동 부와 함께 조모의 집을 방문하는 등 친인척과의 왕래가 활발함.

(4) 2008.08.14. 아동의 부는 아동을 위하여 학습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아동 부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학습을 위해 인터넷 강의, 바우처 기관 등을 통해 약 100만원 정도의 학습비를 부담함.

(5) 2010.03.02 아동부의 가정에서 아동모의 가정으로 가정복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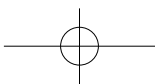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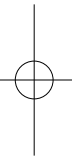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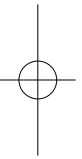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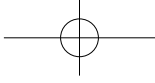
» 아동 모의 상태가 호전되어 아동과의 생활이 가능함에 따라 원가정으로 복귀 됨.

(6) 2010.03 ~ 12. 본 기관에서 아동의 장학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음.

» 2009.12.14. 미국에 있는 교민 성당 관계자가 아동 장학금을 매월 지원하고자 해서 아동 사례개요서를 발송함.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함.

VIII. 심사위원 평가 종합의견

- 이혼의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상태에 빠진 모로 인해 10여 년간 장기적인 아동학대 상태에 놓여 있던 피해아동에 대하여 기관의 신속한 개입과 가족, 행정, 의료, 경찰, 학교, 종교, 병원 등 가능한 지역자원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한 결과, 헤어졌던 부와의 관계회복, 모의 정신과 치료, 자활능력 회복, 아동의 잠재능력의 발휘 등 가정복귀 및 아동의 건강한 학교생활 적응 등 “기적적인 변화” 를 이끌어낸 우수사례로 평가됨.
- 아동과 가족의 강점을 활용하여 아동의 학교적응과 가정복귀를 이끌었으며,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특히 소원했던 부와의 연락으로 아동을 위한 가족자원을 잘 활용하였으며, 모에 대한 자활서비스 지원이 돋보임.



협력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시설 내 성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 개입

• 기관명 :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09년 9월 4일 보건복지 콜센터를 통해 C시설 내 문○○아동과 김○○아동이 시설 원장으로부터 성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신고 되었음. 문○○아동과 김○○아동의 현장 조사를 통해 진술을 확보한 후 2009년 9월 15일 경찰과 함께 영장발부 받아 ○○지방경찰청 제 2청사 여경기동대와 관할 시청과 협조하여 시설 원장을 긴급체포 하였음. C시설에 거주하고 있던 남자아동들은 타 시설로 분리하여 전원조치 하고 여자 아동들을 상담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김다정 아동의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 사실이 드러남.

아동을 긴급 분리하여 경기북부좋은이웃쉼터에 보호조치 하면서 원스탑지원센터를 연계한 산부인과 진료,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한편 아동의 전학처리를 통해 성학대에 재노출될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음.

이후 지속적인 아동상담 외에 친모를 독려하여 직업생활을 유도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정을 지지함. 학대행위자인 시설 원장의 형이 신고되어 위험요인이 감소하고 친모의 경제활동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아동을 원가정 복귀 시키고 F-up을 통해 심리치료 및 학습지원을 연계함.

I. 사례개요

아동성명	김다정(가명)	아동 성별 및 연령	여, 15세
학대행위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김○○(시설원장)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남, 50세
학대유형 (중복응답)	<input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II. 신고접수

2009년 9월 4일 보건복지 콜센터를 통해 C시설 원장이 시설 내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성학대 해 오고 있다는 의심 사례 접수함. 신고자는 C시설을 후원하는 후원자로 이 시설에서 일했던 보육사에게 2009년 8월 14일 아동들이 성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신고를 주었다고 함. 시설 원장이 몇 년 동안 정기적으로 문○○아동, 김○○아동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에 대해 아동들로부터

진술이 있었으며 김○○아동과 보육사가 대화했던 녹취 파일을 보육사가 가지고 있다고 함.

2009년 9월 12일 윈스탑 지원센터에서 문○○아동의 진술을 확보한 뒤 신고자의 신변 보호 및 학대행위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관할 시청, 여경기동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9월 15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함께 방문하여 시설 내 모든 아동들을 분리하도록 함. 시설 원장이 시청에 방문할 때 여경기동대는 시설 원장을 체포하는 동시에 윈스탑 지원센터와 본기관의 상담원들은 C시설로 가 남자 아동들은 타 시설로 전원 조치하고 여자 아동들은 윈스탑지원센터로 옮겨 개별상담을 진행함. 이때 추가로 김다정 아동의 성학대 피해 사실이 드러났음. 아동은 시설 원장으로부터 성관계장면노출, 성기 삽입, 성추행 피해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을 함.

Ⅲ. 현장조사

1. 현장조사

2009년 9월 12일 윈스탑 지원센터에서 문○○아동의 진술을 확보한 이후 2009년 9월 15일 10시 경 관할 시청 가족여성과 담당자와 여경기동대, 본 기관이 만나 시설 원장 체포와 나머지 아동들의 분리에 대한 회의를 진행함. 여경기동대는 C시설을 후원하고자 하는 기업체와의 행사가 시청에서 14시에 진행됨에 맞추어 시청에서 행사 진행을 기다리고 있다가 시설 원장을 긴급 체포함으로써 학대행위자의 도주를 막을 수 있었음. 이후 윈스탑지원센터와 본 기관은 C시설로 찾아가 남자 아동들은 타 시설로 전원 조치를 하고 여자 아동 11명은 윈스탑지원센터로 데리고 와 진술녹화를 진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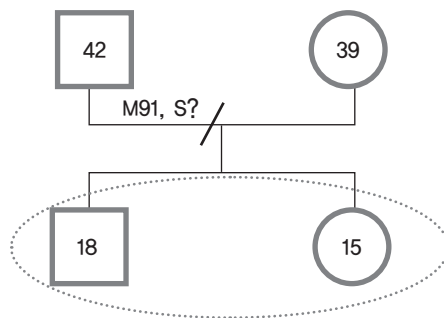
11명의 아동들 진술 녹화 결과 총 6명의 아동들이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으며, 그 중 김다정 아동은 시설 원장으로부터 성관계장면노출, 성기삽입, 성추행 피해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여 이에 대해 즉각적인 의료 조치 및 산부인과적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실질적으로 아동의 보호자였던 시설 원장은 아동들을 시설 내에서 엄하게 대하고 있었으며, 자신에게 잘 보여야만 시설 내 생활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등 압력을 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음. 아동은 시설 원장이 무서워서 성학대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다고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원장은 지역 내에서 덕망 있는 사람으로 신뢰가 깊어 지역사회 내에 아동이 계속 거주할 경우 아동 보호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아동의 친모는 친부와 연락 두절 된 이후 생활고에 시달려서 김다정 아동과 오빠를 C시설에 보호하였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들을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았음. 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한다면 시설 원장의 가족들이나 친인척들로부터 신변 보호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아동을 경기북부좋은이웃센터로 격리 보호 조치함.

2. 초기조치

아동의 진술녹화 시 학대행위자인 시설 원장으로부터의 삽입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 조치 및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시설 원장의 고소고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설 원장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동을 찾아와 합의를 중용할 가능성이 높음. 이로 인해 아동이 계속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 생활한다면 시설 원장의 친인척이나 가족들로부터의 접촉이 있을 수 있고, 모니터링이 쉽지 않으며 아동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아동의 보호자인 친모는 채무 문제로 수배 중이라 아동을 적절히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였음. 스크리닝 척도 결과 아동요인 1점, 행위자요인 1점, 생활환경요인 1점, 보호요인 1점, 총합 4점으로 아동학대사례 (성학대)로 판정하고 아동을 경기북부좋은이웃쉼터로 격리 보호 조치 함.

IV. 사정

	성명	성별	연령	관계	동거여부	직업/학교	비고
가족사항 (아동포함)	김00	남	42	친부	비동거	파악안됨	행방불명
	최00	여	39	친모	비동거	무직	
	김00	남	18	오빠	동거	고등학생	C시설거주
	김다정	여	15	아동	동거	중학생	C시설거주



1. 강점사정

김다정 아동은 본인의 상황과 피해 사실에 대해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진술하였으며, 시설 원장이 본인에게 가한 성학대 내용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시보호조치 된 경기북부좋은이웃쉼터와 전학 온 학교에서 뛰어난 적응력을 보였음. 또한 본 상담원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였음. 이 외에도 경



제적으로 어려운 친모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학습에 대한 욕구도 높아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음.

친모 또한 아동의 성학대 피해 사실을 알고 난 뒤 아동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며 성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적 충격에 대해 잘 이해하여 본 기관의 개입과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였음. 아동에 대한 애착이 강해 구직활동을 통해 직업을 얻게 되면 아동과 함께 살려는 의지도 강했음.

2. 위험사정

김다정 아동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설 원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학대에 노출되어왔기에 그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인 손상을 가지고 있음. 또한, 아동이 진술 녹화 이후에도 C시설이 있었던 지역 내 다른 시설이나 그룹홈에 거주할 경우 모니터링이 힘들고 시설 원장에 대한 수사 진행 중 시설 원장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 신변보호에 위험이 있을 수 있음.

친부는 아동이 5살 때부터 집을 나가 연락 두절되었으며, 이로 인해 친모가 이혼서류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한부모 가정지원 등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핵성 늑막염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임. 거주지 없이 지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채무 문제로 수배중이 상황임. 아동의 오빠는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C시설 폐쇄 후 다른 지역의 B시설로 옮겨 생활하고 있음.

시설 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체포 영장이 발부 되어 긴급 체포 된 상태이며 재판이 끝나고 형이 선고될 때까지 시설 원장의 가족과 친인척이 아동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음.

3. 욕구사정

아동의 가장 긴급한 욕구는 C시설과 시설 원장의 보호에서 벗어나 성학대의 위험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임. 또한 약 5년간 시설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시설 내 아동들끼리의 질서유지 및 규칙 준수에 많이 지쳐 있었으며 원가정 복귀하여 친모와 함께 살기를 희망함.

아동의 친모는 우선 건강을 회복한 뒤 직업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아동과 함께 살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을 마련한 후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희망함. 그 전까지는 아동을 본 기관에서 적절히 보호하여 시설 원장이나 원장의 가족들이 아동에게 접근하여 합의요청하는 것을 막아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자 했음. 이 외에도 아동이 받은 심리적 충격을 심리 및 상담을 통해 치료받고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신체적 손상도 치료받기를 원함.

V. 개입

1. 개입목표

성학대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개입함. 아동을 행위자와 분리 보호 조치 하여 재학대 노출 위험을 차단하고 시설 원장의 친인척과 가족들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도 막도록 함.

또한, 학대 행위자인 시설 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위해 심리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친모에 대한 지지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함.

이를 위해 장·단기적 개입 계획을 세우고 순차적 사례 진행을 통해 2009년 9월 15일 1차 현장 조사 후 위험사정 척도 요인별 점수 중 아동요인3점, 보호자요인3점, 행위자요인 3점, 생활환경요인 3점을 원가정 복귀할 시점에는 각 0점~1점으로 낮추는 목표 세움.

2. 개입계획

1) 장기계획

- » 가정복귀되기 전까지 경기북부좋은이웃센터를 통해 보호조치하여 아동의 지속적인 안전을 확보
- » 학대행위자의 고소고발 사항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여 법원공판 및 판결사항 확인
- » 아동의 개별심리치료 및 집단 치료 지원
- » 친모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

2) 단기계획

- » 격리 후 좋은이웃센터에 보호조치 하여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
- » 원스탑지원센터 연계 및 검찰 협조하여 행위자를 고소고발 조치
- » 심리검사를 통해 심리치료를 연계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 도모
- » 산부인과 진료 연계하여 아동의 성학대 휴유증 치료
- » 쉼터 생활 적응 후 전학처리를 통해 가까운 학교에서 학습 지속

3. 개입과정

1) 초기단계

- : 현장 조사 후 1차 조치결과에 따른 개입과정
- » 현장조사 시 시청 가족여성과 담당자와 여경기동대, 본 기관이 만나 시설 원장 체포와 나머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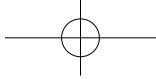
동들의 분리에 대한 회의를 진행함. 여경기동대는 C시설을 후원하고자 하는 기업체와의 행사가 시청에서 14시에 진행됨에 맞추어 시청에서 행사 진행을 기다리고 있다가 시설 원장을 긴급 체포함으로써 학대행위자의 도주를 막을 수 있었음. 이후 시청 담당자와의 협력을 통해 남자 아동들은 타 시설로 전원 조치 하고 윈스탑 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여자 아동 11명은 진술녹화를 진행하였음. 시청과 여경기동대, 윈스탑지원센터와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통해 아동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분리 조치하고 학대 행위자를 고소고발 진행 할 수 있었음.

- »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입함. 아동을 격리조치하여 쉼터에 보호함으로써 성학대 피해아동의 고소고발을 진행하던 중 행위자인 시설 원장과 친인척들의 접근을 막고 성학대에 재노출 될 위험을 제거할 수 있었음.

2) 중기단계

: 격리보호 조치 후 2010년 2월 가정복귀에 대한 논의 전까지 개입과정

- » 아동이 쉼터에서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상담원과의 개별적인 상담을 지속하는 한편, 성학대 휴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윈스탑지원센터와 의료원을 연계하여 성기내 염증을 치료하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도록 함.
- » C시설에서 운영했던 시설 후원자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하던 중 학대행위자인 시설 원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C시설을 후원해주던 후원자들에게 메일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됨. 시설 원장은 성학대 가해 사실에 대해 인정하긴 했으나 아동들의 추후 안전을 생각해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 보고했다고 함. 또한 피해아동들과 피해가족들, 행정기관에서 본인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폐쇄조치를 내리기 위해 꾸민 것이라 말한 사실을 알아냄. 즉시 지방경찰청 제 2청사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고, 허위 사실이 계속적으로 유포되어 아동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함.
- » 2009년 9월 30일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발달센터를 이용하여 아동 심리 검사를 진행함. 약 2주 후인 2009년 10월 13일 심리평가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아동은 성학대 경험의 외상적 사건으로 인해 정서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적응적 모습을 호소하고 있어 즉각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음. 이에 따라 2009년 10월 26일 외부 심리치료사를 연계하여 본 기관 치료실에서 개별 놀이치료를 시작하여 매주 월요일 1시간 동안 심리치료로 외상으로 인한 아동의 심리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해소 시키는 시간을 갖음.
- » 아동이 2주간의 생활을 통해 쉼터에 적응 한 뒤 전입 및 전학을 진행함. 격리보호 조치 이후 결석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의 출결사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 측에 요청하여 아동일시보호 확인서를 발송하여 공결처리 함. 비밀전학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을 만나 비밀전학처리를 요청하였으며, 아동이 다니던 D중학교 교감선생님, 학적담당 선생님과 통화하여 비밀전학에 필요한 서류를 발송하고 아동의 신변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할 것을 약속받음.



약 3일 뒤 교육청 전학처리 담당자와 통화하여 S 중학교로 비밀전학 될 것임을 확인 후 내방하여 교감 선생님을 만나 전학 처리하고 아동의 학대 상황에 대해 설명하여 아동이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요청함. 학대행위자의 공판 진행 전이므로 아동의 비밀 전학을 위해 교육청 및 각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비밀유지하여 전학처리 할 수 있었음. 전학처리 이후에는 수업료와 급식비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청함. 또한,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수급비 신청 및 전입 처리를 완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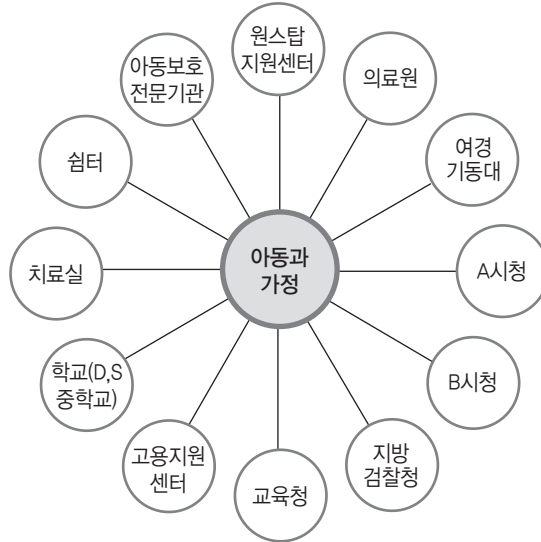
- » 지방경찰청 제 2청사 담당 경장 및 지방검찰청의 담당 검사와 지속적으로 통화하여 학대행위자인 시설 원장의 내사수사 내용, 공판 진행 사항 및 2010년 1월 26일 최종 법원공판 및 판결을 받을 때까지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 시설 원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 받았음.
- » 2009년 9월 1차 현장조사 이후 아동이 본 기관 컴퓨터 입소되어 격리보호조치 된 뒤 친모가 방문 상담하여 아동의 일시보호확인서를 작성하였음. 이후 아동의 심리검사 시 부모님 인성검사와 함께 실시하였으며 이 때 친모의 우울감과 불안감이 유의미한 수준이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음. 이에 지속적으로 아동 담당 심리치료사나 본 상담원이 친모와 통화해서 아동의 심리치료 상태에 대해 알리고 친모와 전화로 상담하는 시간을 갖음. 또한, 아동과 친모가 원할 시 언제든지 본 기관으로 방문하여 함께 식사하고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시간을 줌. 설날에는 가정으로 외출하여 며칠 동안 함께 지내는 시간을 제공하기도 하여 아동이 가정 복귀 되어도 친모와의 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함께 지내는 시간을 점차 늘려감.

3) 말기단계

: 2010년 2월 이후부터 가정복귀 되어 사례종결 되기까지 개입과정

- » 친모는 원래 거주하던 지인의 집에서 나와 일을 하여 월셋방이라도 구한 이후 아동의 가정복귀를 희망하였음. 친모의 경제 활동에 대한 의지와 아동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해,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상담으로 지지하였음. 또한,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소개하여 일자리를 알선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주에 있는 공장 내 식당에서 일을 시작함.
- » 2010년 3월 친모가 이사 한 뒤 아동이 이사 간 집으로 가정복귀 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재량휴업일을 이용, 등굣길 익히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아동의 심리치료 및 친모 상담을 지속하여 외상에 대한 부분 이 외에도 가정생활에 대한 자신의 욕구 표현하기, 친모와의 생활에 대한 정서적 경험 나누기를 통해 원가정 복귀 되었을 때 아동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적, 정서적으로 지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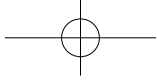
4) 협력체계와의 연계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협력기관	서비스 내용
원스탑지원센터	아동의 성학대 피해사실 진술 녹화 진행
의료원	성학대 휴유증 치료를 위한 산부인과 진료 진행
지방경찰청 제2청사 여경기동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영장 발부 및 긴급체포
시청(A, B)	C시설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생활했던 나머지 아동들의 타 시설로 전원 조치 협력, 가정복귀 후 아동에게 학습 멘토링 서비스 연결
지방검찰청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 진행
학교(D,S중학교)	비밀전학처리 협조 및 아동의 수업료와 급식비 등 면제
교육청	비밀전학처리 협조
고용지원센터	친모에게 직업 알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치료실	아동개별놀이치료 및 친모 상담 진행
센터	아동에게 안전한 생활환경과 정서적 지원 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신고 이후 다양한 협력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아동에게 전반적인 개입 및 서비스 제공, 친모에게 경제적 지원금 지급

VI. 사례종결

» 2010년 4월 7일자로 아동은 원가정 복귀하여 사례 종결 되었음.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입하여 계획했던 개입목표들을 상당부분 달성함. 1차 현장조사 이후 격리하여 쉼터에 보호조치 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성학대에 재노출 되거나 학대행위자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함. 또한, 고소고발조치가 마무리되어 20년형과 전자발찌 착용이 선고 되었으므로 아동에게 위협요소가 감소함. 산부인과 치료로 성학대로 인한 신체적 손상을 치료 받는 이외에 아동 심리 검사와 심리치료를 통해 성학대 외상으로 인한 불안감과 부적응적인 모습이 많이 감소하고 S중학교로 전학 이후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임. 1차 위험사정척도 점수 결과 아동요인 3점에서 종결 시 0점으로 낮아짐.

2. 학대행위자

학대행위자인 시설원장은 2009년 9월 15일 1차 현장조사 시 여경기동대와 관할시청, 원스탑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조로 긴급체포 된 이후 2009년 10월 12일 경찰수사, 2009년 10월 26일 1차 공판을 거쳐 2010년 1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년형과 전자발찌 착용이 선고되었음. 이에 학대행위자의 위협요인이 1차 위험사정척도 점수 결과 3점에서 종결 시 0점으로 낮아짐.

3. 부모 및 가정환경

아동의 친모는 거주하는 집과 직업이 없이 지인의 집에서 살고 있었으나 아동의 성학대 피해사실을 알게 된 이후 아동양육 및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가 높아져 본 기관에서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 양육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지지함. 또한, 고용지원센터를 소개하여 일자리를 알선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친모는 양주에 있는 공장 식당에서 일을 시작,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월셋방을 얻어 이사 함. 이로써 아동과 친모를 지지하여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원가정 복귀를 할 수 있는 심리적, 물질적인 여건이 마련되었음. 1차 위험사정척도 점수 결과 보호자 요인과 생활환경 요인은 각 3점이었으나 종결 시 각 0점으로 낮아짐.

4. 기타 상황

아동은 성학대 피해 진술 이후 본 기관 쉼터와 치료실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되었으며 원가정복귀 되더라도 친모와의 가정생활, 고등학교 진학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지속하여 가정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또한, 아동이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친모와 함께 거주할 지역사회로 이사하여 빨리 적응하고 지역사회 내 학교에 배정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상담원의 소견 및 아동의 욕구가 있었음. 이 외에도 아동이 친모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으며 친모 또한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클라이언트의 자

기 결정권과 욕구를 존중하여 원가정복귀 및 사례종결 하도록 함.

5. 위험사정척도 결과

1차 위험사정척도 시 아동요인 3점, 보호자요인 3점, 행위자요인 3점, 생활환경 요인 3점으로 총합 12점이었음. 아동은 시설 원장으로부터의 성학대가 수차례 있었음. 실질적으로 아동의 보호자인 시설 원장은 아동들을 엄하게 키우고 있었으며, 자신에게 잘 보여야만 아동들이 시설에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근히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고 함. 아동들은 시설원장이 무서워서 성학대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다고 함. 아동이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계속 있을 경우 시설 원장의 가족 및 친인척과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시설 원장은 지역 내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라 시설 내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정확하게 지역사회가 모니터링 하기 힘든 상황이었음. 그러나 본 기관에서 개입 후 시설 원장이 20년 형과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 받았기에 아동에 대한 위험 요인이 제거되었으며 원가정 복귀하여 친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게 되었기에 종결 시 아동요인 0점, 보호자요인 0점, 행위자요인 0점, 가족요인 0점, 생활환경요인 0점, 보호요인 0점으로 총합 0점이 됨.

6. 상담원 소견

아동은 C시설에서 거주하는 동안 시설원장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성추행 및 성폭행이 수차례 있었음. 이에 시설 원장을 고소고발조치 함으로써 20년 형과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받음. 아동은 1차 현장조사 이후 즉시 본 기관의 경기북부좋은이웃쉼터로 격리보호조치 되면서 적절한 심리정서적 지원, 신체적 병원진료,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서비스를 받았음. 아동의 친모 또한 아동의 성학대 피해사실을 알게 된 이후 아동양육 및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가 높아져 본 기관에서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았고, 일자리를 얻어 경제활동을 시작함. 이로써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얻을 수 있었고 타지역으로 이사하여 아동과 함께 살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친모와 아동은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살 것을 간절히 원하였으며 원가정복귀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적응하는 기간을 가진 후 지역사회 내에서 진학하기를 원함에 따라 아동을 가정복귀시키고 사례를 종결함.

초기 개입목표로 세웠던 아동의 안전 확보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위해 심리검사와 치료를 지원, 친모에 대한 지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 했던 아동의 원가정복귀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음. 아동에 대한 장·단기적 개입 계획을 토대로 순차적 사례 진행을 통해 2009년 9월 15일 1차 현장조사 후 위험사정 척도 요인별 점수 중 아동요인 3점, 보호자요인 3점, 행위자요인 3점, 생활환경요인 3점을 원가정 복귀할 시점에 각 0점으로 낮추어 위험요인 감소 목표를 달성함.



VII. 사후관리

- » 2010년 4월 7일 종결 이후에도 2010년 7월 12일까지 총 12회기의 아동 심리치료 서비스와 친모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함. 아동의 가정생활에 대한 상담, 친모에게 감정 표현하는 연습, 친모와 가정생활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적 감정 해소 및 학습 상담, 친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상담을 통해 아동과 친모의 가정생활이 원활하도록 지원함.
- » 2010년 5월 24일 본 기관의 복지사업비 항목 중 경제적지원을 활용하여 일금 200,000원을 아동의 하계 교복 구입에 필요한 후원금으로 지원함.
- » 관할시청을 통한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를 연계하여 학원을 다닐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과 아동에 학습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친모의 경제활동으로 아동이 하교 후 저녁 7시까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함.

VIII. 심사위원 평가 종합의견

- 긴급성과 안전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성학대 사례를 발견하고 위험사정척도 점수를 낮추기 위한 장·단기 계획아래 여러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아동 안전을 확보하고 아동·부모에게 강점중심의 서비스 개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가정복귀의 목표를 달성한 우수사례임.
- 특히 피해아동이 시설보호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로의 전원조치보다 친모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지원을 통해 가족재통합을 이루어낸 점은 기관과 상담원의 탁월한 접근과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초기 현장 조사 당시 행정기관 담당자와 여경기동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시설 원장을 긴급 체포함으로써 학대행위자의 도주를 막고 피해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시설의 여자 아동 11명을 개별 상담하여 추가 피해 아동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아동격리 보호 조치 이후에는 아동과 가족의 강점, 위험요인, 욕구를 사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개입 시에는 클라이언트의 강점관점에 포커스를 두고 아동 안전의 확보, 친모에 대한 심리, 정서적지지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함.
- 목표달성을 위해 구체적 개입 시에는 원스담지원센터, 지방경찰청, 시청, 지방검찰청, 의료기관,



2010 아동보호전문기관 10주년 기념
아동학대 우수사례보고서

교육청, 고용지원센터, 쉼터와 상담치료실 등 크고 작은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아동과 가정에게 심리검사와 치료, 정서적 지원, 상담, 경제적 지원, 구직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함.

- 사례 종결 이후에도 친모와 아동의 적응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충실히 제공함.

사례 4

친부에 의한 중복학대사례 “두 자매가 찾은 진정한 행복”

• 기관명 :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2009.12.01. 아동부에 의한 아동 성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신고 된 사례이다. 개입초기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쉼터입소 및 산부인과 진료를 실시하였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경찰수사를 의뢰하였다. 일시보호 시 아동이 보이는 정서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리치료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여 친인척보호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재 아동부에 대한 구속재판이 진행 중이며, 아동은 아동모의 보호아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I. 사례개요

아동성명	김민희 / 김민정 (모두 가명)	아동 성별 및 연령	여, 12세/ 여, 11세
학대행위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김혁재(친부, 가명)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남, 39세
학대유형 (중복응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II. 신고접수

- ▶ 신고접수일 : 2009.12.01.(화)
- » 신고자는 성폭력상담소 상담원으로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담임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함.
- » 담임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김민희는 이틀 전 아동부와 성관계가 있었으며, 동생인 김민정도 성학대피해를 당하였다고 함.
- » 부녀가정으로 시급히 격리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본 기관으로 신고됨.

Ⅲ. 현장조사

1. 1차 현장조사 (2009.12.01.화, 13:20~18:17)

피조사자	조사내용
성폭력 상담소 상담원 방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민희는 친부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당해 옴. 담임교사는 성폭력피해도 의심하고 있음. · 오전에 김민희 산부인과 진료를 실시 함. 진료결과 질 내에 출혈 및 삽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산부인과 진료를 실시했을 뿐, 성폭력 피해상황에 대한 상담은 실시하지 않았음.
김민희 방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아동부, 동생 김민정과 함께 살고 있음. 부모는 김민희가 7세경(2004년 경)에 이혼 함. 7~10세까지 아동부와 함께 생활하였고, 10~13세 까지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 함. 그러다가 2008년 10월경부터 다시 아동부와 함께 살게 됨. ·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이유는 아동부 홀로 아동들을 키우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함. 아동부는 밥을 챙겨주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동들을 아동양육시설로 보냈다고 함. · 김민희는 아동부와 함께 지내는 동안 지속적으로 성학대 피해를 받아옴. 아동부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술 마신 이후 김민희의 몸을 만졌음. 김민희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기도 함. · 아동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김민희와 성관계를 맺음. 김민희가 거부하면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림. 김민희가 생각하기에 아동부가 취한 상태에서 한 행동이므로 술이 깨면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고 함. · 아동부가 김민희를 성폭행하는 도중에 술이 깬 적이 한 번 있었음. · 당시 아동부는 “내가 왜 이지랄 하고 있노?” 라고 말했고, 김민희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음. 그러나 이후에도 아동부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 옴. · 아동부가 김민희의 몸을 만진 적도 있었음. 김민희가 5학년 일 때, 아동 양육시설에서 휴가를 받아서 집을 방문한 때였음. · 목욕탕에서 씻고 있는데 김민희의 울음소리가 났음. 처음에는 옆집 아기가 우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울음소리가 너무 가까이 들림. 욕실 문을 열어보니 아동부가 김민희의 몸을 만지고 있었음. · 김민희는 아동부와 떨어져서 지내고 싶으며, 아동외조모 집에 가서 지내고 싶음. 그러나 아동부가 경찰서에 가는 것은 원치 않음.
김민희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 방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김민희를 상담했다고 함. 아동부는 김민희의 질이 아닌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함. · 김민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 같다고 함. · 성폭력상담소 상담원은 김민희 산부인과 진료 시 질 내 삽입으로 이해하고 항문부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김민희의 동의를 구해서 산부인과 진료를 재실시하기로 함.
김민희 방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민희와 함께 아동집을 방문하여 김민희를 만남. 아동집의 주거환경 및 청결상태는 양호 함. · 김민희는 김민희와 마찬가지로 아동부와 함께 살기 힘들다고 하였고, 아동부가 쇠뿔등이로 때려서 엉덩이에 멍이 들었다고 이야기 함. .

피조사자	조사내용
김민희의 산부인과 진료실시	· 아동 질과 항문에 외상이나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처녀막 파열도 없음. 항문삽입은 질 내 삽입에 비해서 오히려 손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함.
아동의 쉼터 입소	· 학대행위자와 아동이 다른 보호자 없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학대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일시보호를 실시 함.
아동부 전화조사	· 아동부에게 전화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전하였고, 아동보호 사유 및 향후 본 기관의 진행절차 등에 대해 설명함.
초기조치	· 2010.12.01.(화) 아동부에 의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로 판정함. · 현장조사 결과, 아동부는 아동들의 엉덩이를 때려서 멍이 들게 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신체학대로 판정함. · 또한 아동부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술을 마신 후에는 아동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정서학대로 판정함. · 아동과의 상담결과 아동부에 의한 지속적인 성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성학대로 판정함. · 아동부에 의한 성학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파악되어 이에 사례판정 후 아동들의 의사에 따라 긴급격리보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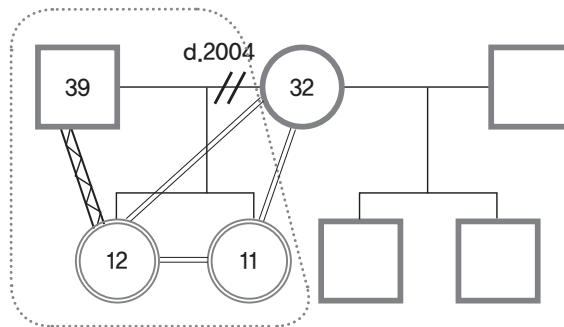
2. 2차 현장조사 (2009.12.02.수, 09:20~16:00)

피조사자	조사내용
김민정 담임교사 전화조사	· 김민정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다소 지능이 낮고 교우관계도 좋지 않다고 함. 기본적인 학습능력이 1~2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수업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게 있을 때가 많다고 함. 집에서 방치한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함.
김민정 내방조사	· 아동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으나, 아동부에게 맞는 것은 싫음. 친구 집에서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서 맞은 적 있으며, 김민희와 싸워서 맞은 적도 있다고 함. 아동부는 주로 쇠몽둥이(밀대걸레의 쇠 부분을 분리하여 사용)로 엉덩이를 30~60대 가량 때림. · 지난 주 일요일(2009.11.29.)에도 준비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동부에게 맞음. 옷장에 손을 대고 서서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맞았고 멍도 들었음. · 아동부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김민희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쇠몽둥이로 때린다고 함. 김민희가 뺨맞는 모습도 본 적 있음. · 아동부는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웃지만, 술을 마시면 아동에게 심한 말(욕)을 하고 때림. 아동부가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에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아동부가 잠들 때까지 기다림. · 아동부는 매일 김민희를 아동부 방으로 불러서 재우며, 김민정은 작은 방에서 혼자 잠을 잘 때가 많음. 아침에 발가벗은 아동부와 김민희를 본 적 있음. 아동부가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마다 아동모에게 가고 싶었음. · 부산 신평동에 거주할 때(김민정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동부와 단둘이 있었던 적이 있음. 당시 아동부는 김민정의 옷을 강제로 벗겼음.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음.

피조사자	조사내용
아동부 내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들은 과거에 한 번씩 가출한 적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여 옴. 가장 최근에는 아동들이 아동부 돈을 훔친 일로 매를 들었음 · 아동들을 엮드리게 하여 엉덩이를 10대 가량 때린 것 같음. 아동들을 때릴 때 정해진 매는 없으며, 화가 나서 흥분해 버릴 때가 있음. · 아동들을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아동들에게 성학대를 가한 적은 없음. 솔직히 아동을 보듬고 자거나 가끔 장난치다가 찌찌만지는 것 밖에 없음. · 아동부는 술을 자주 마시는 편임.

IV. 사정

	성명	성별	연령	관계	동거여부	직업/학교	비고
가족사항 (아동포함)	김혁재	남	39세	친부	동거		학대행위자
	김민희	여	12세	아동1	동거	중1	
	김민정	여	11세	아동2	동거	초6	
	고혜경	여	32세	친모	비동거	재봉사	



* 아동모는 재혼한 상태로 2명의 자녀를 출산함.
아동모의 재혼 이후 가족에 대한 세부정보 파악안됨.

1. 강점사정

대상	내용
학대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음. ·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을 때에는 아동에게 학대를 가하지 않음.

대상	내용
피해아동	<p><김민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음. ·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함. 칭찬을 받은 긍정적인 행동을 지속함. · 언니로써 동생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음. <p><김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 언니를 잘 챙기며, 정리정돈을 잘함.
부모 및 가족	<p><아동모, 아동외조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나지 못하여 파악되지 않음.

2. 위험사정

대상	내용
학대 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의 매일 술을 마심. 주로 술 마신 이후에 아동들에게 학대를 가함. 취했을 때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함. · 성학대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피해아동	<p><김민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부에 대한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음. · 난폭한 언행 및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분노조절이 잘 되지 않음. · 이성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많으며, 소유욕이 강함. <p><김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폭한 언행 및 퇴행적인 행동(아기같은 말투)을 보이며, 분노조절이 잘 되지 않음.
부모 및 가족	<p><아동모, 아동외조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나지 못하여 파악되지 않음.

3. 욕구사정

대상	내용
학대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시설입소를 원하지 않음.
피해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부와 분리되어 아동외조모 혹은 아동모와 함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
부모 및 가족	<p><아동모, 아동외조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나지 못하여 파악되지 않음.

V. 개입

개입목표	개입계획	
	장기계획	단기계획
아동이 위험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양육되도록 돕는다.	· 장기보호방안논의 · 심리치료 실시	· 아동 일시보호 및 병원 진료
아동의 욕구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동의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장기보호방안논의(친·인척 상담 및 사례회의) · 아동의 학대후유증 감소를 위한 심리치료 실시	· 아동 위탁학습 의뢰 및 기초학력증진을 위한 개별학습 진행 · 부적절한 성개념 개선 및 바람직한 이성 관계를 맺기 위한 아동 성교육 실시 · 성학대후유증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연계 · 학대행위자 수사의뢰 및 아동 진술 녹화 동행
수사기관에 학대행위자 수사를 의뢰하여 아동에 대한 재학대를 예방한다.	·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사진행 과정 모니터링	· 아동모, 아동의 조모 상담과 환경 조사

1. 개입과정

1) 초기단계

구분	내용
아동 일시보호 및 위탁학습 요청	· 2009.12.01(화) 기관 부설 쉼터 아동 일시보호 실시 · 일시보호기간 : 2009.12.01.(수) ~ 2010.02.08.(월) (68일) · 일시보호시설 : 일시보호쉼터 공동생활가정 다솜 ·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에 일시보호사실을 알리고 위탁학습을 요청함.
아동부 상담	· 2009.12.01.(화) 아동부에게 전화상담으로 아동부에 의한 학대사항이 발견되어 본 기관에서 보호 중임을 알림. · 상담원은 아동부에게 성학대 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임을 알림. · 2009.12.02.(수) 아동부가 본 기관으로 내방함. · 아동부는 신체학대 부분은 인정하였으나 성학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현재 아동들은 아동부와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아동부 역시 만남을 원치 않는 상황을 안내함. · 상담원은 아동들로부터 성학대가 파악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할 것임을 알림. · 2009.12.07.(월) 아동부가 본 기관으로 전화함. · 아동들이 곧 생일이므로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하였음. · 아동들이 아동부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아 아동부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음.
지역자원연계	· 2009.12.02.(수)~2010.02.08.(월) 쉼터 인근에 위치한 공부방을 연계하여 매일 학습지도를 실시함.

구분	내용
아동과 사례진행과정에 대한 논의	· 2009.12.04.(목) 심리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심리검사 실시에 대한 동의를 받음.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 2009.12.04.(목)~2010.02.05.(금) 매주 월,수,금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아동모 상담	· 2009.12.07.(월) 아동모가 외조모와 함께 기관을 방문함. 아동모로부터 아동부와의 이혼사유가 아동부의 외도와 가정폭력이었음을 파악함. · 아동모가 전일 친정식구들과 함께 아동의 보호문제를 논의하였고, 아동모가 아동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때까지 산청의 외조부모가 아동들을 보호하고 싶다고 함. · 상담종료 후 아동모와 아동이 만남, 아동과 아동모는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림. · 이혼 이후 아동모가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였으나 아동부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고 함. · 아동모는 친권변경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함.
소아정신과 진료	· 2009.12.07.(월) 삼성병원 소아정신과 초기진료 실시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 2009.12.09.(수) 지역 경찰서에 성학대 피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
위탁학습연계	· 2009.12.09.(수) 중학교 및 초등학교 위탁학습 연계

2) 중기단계

구분	내용
진술녹화 실시	· 2009.12.11.(금), 2009.12.15.(화) 학대피해사실에 대한 진술녹화 실시 : 경찰서
아동모 상담	· 2009.12.14.(월) 아동모에게 친권변경과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다고 함.
Daum 하이픈 희망모금 사례선정	· Daum 하이픈 희망모금 성학대피해아동 치료지원사례로 선정
아동 성교육 실시	· 일자 : 2009.12.21.(월), 2009.12.22.(화), 2009.12.29.(화)
아동 심리검사	· 성교육 강사 : 성가족상담소 전문강사
심리검사결과 상담	· 2010.01.07.(목) 삼성병원 소아정신과를 방문하여 아동의 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 · 아동의 지능이 70정도로 경계선 수준이라고 함. · 아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함. 다행히 성학대로 인한 고통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함. 아동의 연령에 비해 인지, 정서적 기능은 낮은 초등학교 수준이므로 아동을 지도할 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아동퇴소	· 2010.02.08.(월) 아동모에게 아동을 인계함. (주소지 이전)

2) 말기단계

구분	내용
비밀전학추진	· 2010.02.18.(목) 아동이 다니던 학교 소재의 교육청과 전학할 학교소재의 교육청에 아동의 비밀전학을 요청하고 필요한 자료를 발송함.
아동부 검찰송치	· 2010.03.31.(수) 아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됨.
보호관찰소 자료요청	· 2010.04.14.(수) 보호관찰소에서 아동부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의 심리상태 등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함.
검사상담	· 2010.04.15.(목) 법원에서 아동부의 친권상실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함.
사례이관	· 2010.05.13.(목) 아동에 대한 서비스제공의 연속성을 위해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를 이관함.
모래놀이치료 서비스 제공	· 일시 : 2010.06.04.(금), 2010.06.18.(금), 2010.06.24.(목), 2010.07.02.(금), 2010.07.12.(월), 2010.07.19.(월) · 장소 : 아동 거주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거주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상담	· 2010.08.10.(화) 아동부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이로 인해 아동들이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불리해 질수도 있다 함. · 아동모는 8월 11일 재판을 위해 지방법원에 갈 것이라고 함.
아동모 상담	· 2010.08.10.(화) 아동모는 아동들과 함께 법원을 가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며 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함. · 상담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를 하여 경호원이 아동모와 아동들을 경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재판당일 아동모, 아동들은 본 기관 상담원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여 법원으로 갈 수 있도록 동행하였으며 재판이 끝난 후 경호원이 버스터미널까지 차량 지원을 함.
아동모, 김민정 지방법원 재판 증인 참석	· 2010.08.11.(화) 18:00~20:30까지 재판을 하였으며 아동들과 아동모는 안전을 위해 다른 방에서 증인진술을 함.
지방검찰청 민원실	· 2010.09.10.(금) 검찰청에 문의하자 공판결과 아동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8년과 개인정보 열람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8년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 됨.

VI. 사례종결

1. 피해아동

아동은 아동부로부터 학대를 받아 본 기관 부설쉼터에 입소하였으며, 현재는 아동모와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음.

2. 학대행위자

구속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동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낮음.

3. 부모 및 가정환경

아동친모가 현재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가정환경은 안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4. 기타 상황

아동친모의 보호로 인해 거주지가 서울로 변경되었으며,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자 함.

5. 위험사정척도 결과

- » 아동요인 15점, 보호자요인 3점, 가족요인 1점, 총19점.
- » 아동들은 현재 서울에 있는 아동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
- » 아동은 전한 간 학교에서 친구들과 마찰을 겪고 있으나, 아동모에게 보호조치되어 학대위험요인은 감소한 상황임.
- » 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가족 내에서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아동 거주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를 이관하여 아동에 대한 심리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6. 상담원 소견

- » 아동이 친인척 보호되어 거주지가 서울로 변경되었고, 학대행위자인 아동부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 » 아동의 비밀전학이 완료되었고 보호자 변경으로 인해서 학대위험요인이 감소한 상황이나, 아동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서비스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아동은 쉼터 입소기간동안 쉼터 내 친구들과 잦은 마찰이 있었고,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도 친구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아동들은 아동모와 함께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본 기관의 개입에 감사표현 포함.
- » 아동모는 아동들이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으며 긍정적임.

» 사례이관을 통해 아동 및 아동모의 상담, 아동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부에 대한 재판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례종결 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아동부 재판진행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자 함.

VII. 사후관리

1. 사례이관을 통한 서비스 단절 예방

- » 아동이 이전한 거주지를 관할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를 이관하여 아동에 대한 서비스(심리치료 및 상담)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 현재 공판중인 사건에 대하여 아동모와 아동이 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 학대행위자 재판진행과정 모니터링

- » 학대행위자가 현재 법원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현재 사건이 공판 중에 있는 상황임.
- » 학대행위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동 거주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재판진행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
- » 법원에서 요청하는 증거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 진행함.

VIII. 심사위원 평가 종합의견

- 이혼 후 성적,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자매에게 친부가 자행한 사례로 친부의 구속, 재혼한 친모의 아동친권회복과 보호결정 등 위기개입을 통한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법적 사회적 심리적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한 우수사례임.
- 아동부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성학대로 인해 적절한 지적발달이나 심리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미숙하고 유아적인 발달에 고착되어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잦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성 발달에도 취약한 피해아동에 대해 심리치료, 학습지원, 문화체험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모의 양육권 회복절차를 진행하며 친척의 지지망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한 우수사례임.

사례 5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어 행복해요

• 기관명 :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부의 방임으로 신고되어 현장조사한 결과 스크리닝 척도가 5점, 1차 위험사정척도가 19점으로 표면상 시급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졌으나, 실제 아동들은 학령 전 나이에 다 오래된 방임으로 인해 자기대처능력이 상당히 부족하였고, 양육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추운 겨울에도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니는 등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인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외부에 성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음. 또한, 부의 근로로 보호자가 부재해 끼니 해결 문제가 발생했고, 방문과 대문이 내려앉아 문이 잠기지 않는 등 외부인을 통한 위험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했음.

이에 초기에는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시설을 통한 안정적인 보호를 시도하였으나, 부의 강력한 양육의지와 아동과 부 사이에 잘 형성되어 있는 애착을 강점으로 보고 피해아동, 행위자(부), 가정환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공조관계를 맺으면서 원가정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가정지원서비스를 실천함. 또한, 아동 및 부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부가 직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을 마련하게 하고, 아동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함.

지금은 부가 재가하여 계모가 더불어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전보다 안정적인 환경이 되었으며, 위험사정척도 점수가 8점으로 목표로 설정했던 9점 이하로 위험요인이 낮아져 사례를 종결함.

I. 사례개요

아동성명	김진구(가명)	아동 성별 및 연령	남, 6세
	김미진(가명)		여, 5세
학대행위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김철형(친부, 가명)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남, 44세
학대유형 (중복응답)	<input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II. 신고접수

» 아동은 2009. 02. 18.(목) 11:00경 방임으로 신고 접수됨.



- » 아동들이 추운 겨울에도 옷을 벗고 돌아다니며 적절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민원전화가 들어와 신고자가 가정방문을 실시함.
- » 신고자가 가정방문을 했을 때 실제로 아동들은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고 TV를 보고 있었으며, 아동들에게 옷을 입으라고 권하여도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하였다 함. 아동부도 아동에게 옷을 입히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함.
- » 아동의 가정은 한부모 가정으로 아동들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오후 5시경 집에 귀가하여 부가 귀가하기까지 둘이 TV보내는 것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유치원을 가지 않는 주말에는 보호자 없이 아동 남매끼리 지내고 있어 방임이 우려된다 하였음.
- » 아동들의 피부 상태도 좋지 않으며, 부의 말로는 몇달전 아동이 홍역에 걸려 그러한 것이며, 부의 유동적이지 못한 근로 조건으로 아동들을 적시에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하여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그렇다 하였다 함.
- » 아동부모는 이혼하였고 아동부가 홀로 아동들을 키운지 3-4년 되었다 함.
- » 아동부는 새벽 5시에 출근하여 19~20시에 퇴근하며, 시멘트 등 물류 배달업을 한다 함.
- » 아동부와 아동들은 2평 남짓한 집에서 살고 있으며, 빗 독촉으로 얼마전 이사하였으며, 아동부의 월 소득은 100만원 정도로 월세 30만원에, 빚을 갚으려면 경제적으로 빠듯한 상황이라 하였다 함.
- » 아동부는 아동을 키울 의지는 있어 보였으나,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부족해 보였다 함.

Ⅲ. 현장조사

1. 현장조사

▶ 1차 현장조사일 : 2009.02.18.

1) 목적

» 아동학대 상황 파악 및 서비스 지원여부 파악을 위해 가정방문상담 실시

2) 내용

① 상담 내용

- » 영하의 날씨에 대문과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아동들은 TV를 보고 있었음.
- » 전체적으로 집안의 물건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라면을 끓여 먹었는지 먹고 남은 면이 물에

불은 채 냄비에 붙어 있었음.

- » 냉장고에 먹을 것이 거의 없었음.
- » 저녁을 먹었는지 묻자, 저녁은 부의 퇴근 후 같이 먹는다 함.
- » 부는 새벽에 일하러 나가며, 부가 출근한 후 집으로 전화하면, 김진구 아동이 전화를 받아 스스로 일어나서 동생을 깨워 유치원에 가며, 아침은 굶고 간다 함. 이러한 이유로 아동이 부의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잠든 경우에는 가끔 유치원에 지각을 한다 함. 아침밥을 굶고 유치원에 가면 배고프지 않나하니 아동들은 배고프다며 아침밥을 먹고 싶다 함.
- » 아동들은 유치원을 다니며 다녀온 후에는 부가 올 때까지 집에서 TV 보내는 것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 함.
- » 유치원이 재미있냐 하니 아동들은 스케치북을 보여주고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하듯 소개하며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배우고 해서 재미있다 함. 유치원에 계속 다니고 싶다 함.
- » 주말에는 보호자 없이 아동들끼리 지낸다 함.
- » 아동들을 도와주기 위해 방문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 함.
- » 아동들은 방문과 대문사이 통로에서 목욕하며 스스로 해본 적도 있으나, 보통 부가 씻겨준다 함. (목욕하는 곳은 수도꼭지 하나만 달려 있고 샤워용품은 보이지 않았으며 대문이 닫히지 않아 찬공기가 계속 들어와서 목욕하기에 적절치 않아 보였음.)
- » 목욕할 때 춥지 않은지 물으니, 아동들은 추워서 목욕하기가 싫다며 따뜻한 곳에서 목욕하고 싶다 함.

② 아동 상태

- » 처음에는 약간 낮을 가려 입을 잘 열지 않았으나, 준비해 온 간식들을 챙겨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임.
- » 공격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아동 둘 다 건강은 양호한 편이었음.

▶ 2차 현장조사일 : 2009.02.19.

1) 목적

- » 아동학대 상황 파악 및 서비스 지원여부 파악을 위해 가정방문상담 실시함.

2) 내용

- ① 생육사 및 가족력



- » 아동의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다가 모의 외도로 3년전 별거하여 현재는 부와 아동,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음.
- » 아동들은 모와 연락 두절된 상태임.
- » 부는 계약직으로 건축자재회사에서 배송, 포장 등의 일을 함.
- » 부는 새벽5시에 나가 저녁 8시쯤 귀가하며 늦을 때는 10시까지 일을 한다 함. 일요일만 휴무로 여름휴가 3일 외에는 주말에 근무함.
- » 부의 여동생은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으나, 직장에 다니고 자녀가 4명이라 아동을 돌봐주기 힘든 상태이며, 나머지는 지방에 거주함.
- » 아동의 친조모가 2달 정도 아동을 돌본 적이 있으나, 불의의 사고(집 화재)로 심한 화상을 입어 현재는 타지역으로 이전함.

② 상담 내용

- » 아동은 2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부, 여동생과 함께 생활함.
- » 부의 경제적인 수입은 약 100만원 정도 되나, 월세로 보증금 200만원에 30만원씩 내고 빚을 갚고 있어 생활이 빠듯하다 함.
- » 아동은 유치원에서 점심 및 간식 제공하는 것 외에 대부분 아침을 굶는 일이 잦으며, 저녁은 부가 귀가한 이후 경제적 상황 등으로 대부분 라면으로 해결한다 함.
- » 또한, 새벽에 일을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의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잠든 경우에는 유치원에 지각하는 경우가 있고 옷이나 세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갈 때가 많다 함.
- » 방문 및 대문이 잠기지 않고 욕실이 별도로 구비되지 않아 방문과 대문사이 통로에서 아동의 목욕시 감기에 노출 되기 쉽게 되어 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라 함.
- » 아동은 유치원을 다녀온 이후 부가 귀가하기까지 여동생과 둘이서 TV보내는 것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며, 특히 유치원을 가지 않는 주말에는 보호자 없이 아동 남매끼리 지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함.
- » 아동은 얼마전 수두를 앓고 그 이후 부가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못해 아토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함.

③ 부 상태

- » 부는 아동의 그룹홈 입소에 대해 상당히 거부적임.
- » 부는 보호자 없이 아이들끼리 지내는 것, 끼니를 거르는 것 등에 대해 걱정과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자녀에 대한 관심 및 애정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나 의지는 부족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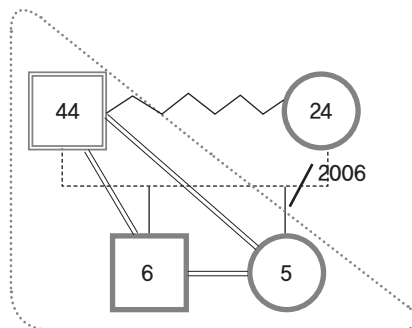
- » 특히, 아이들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거나 추운 겨울에 벗고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보였으며, 옷을 꼭 입혀야 한다는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 그러나 아이들보미, 수호천사같은 서비스 소개에 지원이 가능할 경우 받고 싶다는 욕구를 보이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는 모습을 보임.
- » 경제적인 활동으로 수입은 얻고 있으나, 생활이 빠듯하여 이에 대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의향임.
- » 부는 건강이 양호한 편이나 힘든 일로 어깨 등이 많이 결려 집에 오면 보통 잠을 자는 편이라 함.

2. 초기조치

스크리닝 척도 5점으로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아이들이 식사를 거르는 문제 등 기초적인 생활지원 문제, 추운 겨울에도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니 위험 상황에 노출되고, 자기 몸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인지 결여된 모습 등을 통해 방임으로 사례판정하고, 다양한 가정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가정 보호하기로 계획함. 그러나 실제 아동들이 학령 전 나이로 자기대처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고려하여 차후 아동의 안전을 위해 분리도 고려함.

IV. 사정

	성명	성별	연령	관계	동거여부	직업/학교	비고
가족사항 (아동포함)	김철형	남	44세	친부	동거	배송·포장	-
	김희진	여	24세	친모	비동거	파악안됨	별거
	김진구	남	6세	아동1	동거	유치원	-
	김미진	여	5세	아동2	동거	유치원	-



1. 강점사정

1) 피해아동

- » 애착형성 : 부에게 자연스럽게 안기고 부비는 등의 심리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통해 긍정적인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원가정 보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
- » 적응력 : 친구들과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여 추후 연장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으로 연계하거나 아이돌보미, 수호천사를 지원하여 방임되는 부분을 다소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함.

2) 학대행위자(부)

- » 양육 의지 :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아동에 대한 애착형성이 강함.
- » 긍정적인 수용 : 외부 서비스 연계에 대해 완강한 거부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원가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됨.
- » 경제적 수입활동 : 건축자재회사에서 배송 등의 근로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수입을 얻어 아동을 안정적으로 원가정 보호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2. 위험사정

1) 피해아동

- » 식사 문제 : 오전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 양육자가 부재하여 아침밥을 굶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기초적인 생활지원이 필요한 상태임.
- » 자기 몸 관리 인식 저하 : 추운 날씨에도 옷을 벗고 생활하거나 입으라고 해도 옷을 입어야 하는 것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볼 때 성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는 상황임.
- » 양육자 부재 : 부가 새벽 5시에 일을 나가 저녁 8시경 귀가하여 오전에 유치원 가기 전까지와 유치원을 다녀온 이후 부가 들어올 때까지 양육자가 부재하여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음.
- » 모의 역할 모델링 부재 : 한부모 가정으로 주 양육자가 현재 부이고, 모와는 3년전부터 별거하여 가정 내 아동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모의 역할을 보여 줄 수 있는 올바른 모델링이 부재한 상태임. 이에 모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2) 학대행위자(부)

- » 현 방임되고 있는 아동 양육에 대한 변화 부재 : 아동 연령에 맞는 자녀 양육을 위한 노력이 부재

한 것으로 파악됨.

- » 주변 친인척 부재로 지지체계 부족 : 여동생은 부의 집 근처에 거주하고 있으나,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자녀가 4명이라 아동을 돌봐주기 힘든 상태이며, 나머지 형제들은 지방에 거주하여 만나기가 어려움. 아동의 친조모 또한, 집 화재로 심한 화상을 입어 현재는 지방으로 내려감.

3) 가정 환경

- » 열악한 주거 환경 : 방문 및 대문이 잠기지 않고 욕실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보통 방문과 대문사이 통로에서 아동이 목욕 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어 개선될 필요가 있음.

3. 욕구사정

1) 피해아동

- » 식사 해결 : 오전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 양육자가 부재하여 아침밥을 굽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밥을 먹고 싶다는 욕구를 보임.
- » 유치원 등원 : 유치원에 잘 적응하여 계속 다니고 싶다고 표현함.
- »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 방문과 대문사이 통로에서 아동이 목욕하여 겨울에 너무 추워 목욕하기가 싫다며 따뜻한 곳에서 목욕하고 싶은 욕구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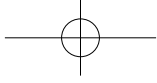
2) 학대행위자(부)

- » 경제적 지원 및 안정적인 취업 : 현장조사 이후 구청과 연계하여 개입하면서 경제적 지원 및 현직업이 계약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욕구를 보임.
- » 아동의 기초적 생활지원 : 양육자인 부가 유동적이지 못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부재한 시간에 아동들의 위험상황을 최소화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할 시(예를 들면, 아동들이 아플 때 병원에 바로 데리고 가 줄 수 있는 아동의 기초적인 생활 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싶어함.
- »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 현재 방문 및 대문이 잠기지 않고, 방이 한 칸이라 비좁고, 방문과 대문사이 통로에서 아동이 목욕하는 등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며 이사하고 싶은 욕구를 보임.

V. 개입

1. 개입목표

- » 부의 방임으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식사를 거르는 아동들에게 반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아이돌보미, 수호천사 등을 파견하여 아동의 기초적인 생활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을 돕도록 함.

- » 연장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연계하여 보호자가 부재한 시간을 최소화하여 위험상황을 줄이고 이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이 원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함.
- » 나아가 아동이 스스로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성교육을 진행하고, 부에게 아동 연령에 맞는 바람직한 양육방법을 제시하며 현 방임되고 있는 아동 양육에 대해 인지하게 함으로써 부의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꾀하여 추후 방임이 스스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
- »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매뉴얼에 의거하여 위험사정척도 점수가 9점 이하로 아동이 원가정 내에서 지내는데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례를 종결하고자 함.

2. 개입계획

1) 장기계획

(1) 피해아동

- » 아동 성교육 :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과 방임으로 인해 자기 관리에 있어 소홀한 부분을 감안하여 아동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영유아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아동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 가정방문 통한 모니터링 : 지속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들이 안전한지 모니터링을 하고자 계획함.

(2) 학대행위자(부)

- »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 자녀에 대한 관심 및 애정이 있고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아동 연령에 맞는 자녀 양육을 위한 노력은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어 부의 양육태도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부모교육 참석을 독려할 계획임. 단순한 물질적 또는 인력 지원이 아닌 부모의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서비스로서 인식이 변화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3) 가정 환경

- » 주거환경 개선 : 단기계획으로 고려중인 주거안정지원비의 외부 지원이 어려워 질 경우를 대비하여 부가 스스로 수입대비 지출규모를 파악하여 저축 등 재무계획수립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현 주거환경이 아이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경제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 나란히 결연 : 부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준비하는 동안 별도로 자녀 명의로 세이브더칠드런과 연계하여 소액 후원금을 월마다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힘쓸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마련해 주고자 함.

2) 단기계획

(1) 피해아동

- » 반찬 지원 : 아침을 굶는 등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충분한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관할 구청을 통해 적십자와 연계하여 반찬 지원을 하고자 계획함.
- » 연장보육 어린이집 등원 : 아이들은 유치원 다녀온 이후 부가 귀가하는 시간까지 집에서 돌이 TV 보내는 것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어 현재 다니는 유치원보다 연장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게 하여 위험상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함. 차량 지원이 되는 연장보육 어린이집이나 집 바로 옆 위치한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하여 등원하게 하고자 함.
- » 아이돌보미 파견 : 부가 새벽 5시에 일을 나가 오전에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이들끼리 일어나 유치원에 등원하고 있어 가끔 지각을 하거나 밥을 굶고, 세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아이들의 기초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를 연계하고자 함. 부는 주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자립심을 피하기 위해 전액 무료지원이 아닌 월 6만원 정도 비용 지출하는 유형으로 신청하고자 함.
- » 수호천사 파견 : 부가 토요일에 일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있어 본 기관에서 진행중인 멘토(수호천사)를 연계하여 기초적인 생활지원 및 학습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방임되는 부분을 다소 해소하고, 멘토링서비스를 통해 모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수호천사 파견이 어려울 경우 노인복지관의 노인일자리를 연계하거나 고용복지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연계하도록 하고자 함.

(2) 가정 환경

- » 주거환경 개선 : 방문 및 대문이 잠기지 않고 욕실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보통 방문과 대문사이 통로에서 아동이 목욕 하는데 작은 수도꼭지 하나가 샤워 시설의 전부로 추운 겨울날에는 통로에서 부는 차가운 바람 때문에 아동이 감기에 노출되기 쉽게 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었음. 특히, 방이 단칸방으로 부와 자녀들이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 함께 동거하고 있어 둘째 김미진 아동의 성적인 부분이 우려되어 방이 두 개 이상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 이에 법원에서 삼성생명과 연계하여 진행중인 주거안정지원사업 '삼성생명 소망램프'에 공모하고자 계획함.

3. 개입과정

1) 초기단계(2009.02.~2009.04.)

- » 부의 방임으로 신고되어 현장조사 한 결과 스크리닝 척도가 5점, 1차 위험사정척도가 19점으로 표면상 원가정보호가 원칙이었으나, 실제 개입하니 아동들의 연령이 학령전 나이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고, 추운 겨울에도 옷을 다 벗고 다니는 등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인지를 전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외부에 성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상당히 보였음. 또한, 오전에 양육자가 부재하여 아침밥을 굽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으며, 방문과 대문이 내려앉아 문이 잠기지 않는 등 외부인을 통한 위험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했음. 아동의 가정은 한부모 가정으로 주 양육자인 부가 새벽에 나가 일을 하고 저녁 늦게 귀가하여 아이들이 유치원 가기전과 다녀온 후에 양육자가 부재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음.
- » 이에 상담원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분리가 불가피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초기 시설 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보호를 하고자 계획함. 그러나 부와 아동의 보호거취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부가 아동의 그룹홈 입소에 대해 상당히 거부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녀에 대한 관심 및 애정, 강한 양육의지가 확고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음. 특히, 아이들이 보여준 부에게 자연스레 안기고 부비는 등의 심리적으로 안정된 모습은 긍정적인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원가정에서 보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였음. 또한, 외부 서비스 연계에 대한 부의 긍정적인 태도, 고정적인 경제적 수입활동은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하였음.
- » 아쉬운 점은 부의 자녀에 대한 관심 및 애정에 비해 현 방임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양육태도의 변화가 소극적인 것으로 비춰져 아동의 연령에 부합하는 자녀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부의 양육태도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함. 이는 단순한 외부지원이 아닌 부의 인식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할 것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함. 하지만, 3-5세 자녀를 둔 부모교육만 가능하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기존부터 진행해 오던 본 기관의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나감. 또한, 옷을 다 벗고 다니는 등 자기 몸에 대한 관리에 있어 소홀한 부분을 감안하여 아동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영유아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아동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하여 인지하게 하고자 함. 그러나 추후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원의 어려움으로 협력을 맺고 있는 대학교를 통해 성교육을 지원하게 되었음.
- » 이어 현 가정이 원가정에서 보호되기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를 무엇보다 1차적으로 아동의 안전과 욕구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세우고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에 의거하여 진행하게 됨. 이에 양육자 부재로 인한 위험상황에서 벗어나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게 우선요인이라 보고, 연장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양육자가 부재한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 위험상황을 감소시킴. 또한, 오전에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 보호자가 부재하여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끼니를 거

르고, 세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청결문제가 발생하고, 지각을 하는 등 올바른 일상생활 영위가 되지 않아 적십자를 통해 반찬지원을 하고, 이러한 기초적인 생활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아이돌보미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파견함. 추후, 아이돌보미가 잠시 중단되어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비용을 일부 후원받아 매일 2시간씩 가사도우미를 지원함. 특히, 가정 내 아동들의 일상 생활에 있어 모의 역할을 보여 줄 수 있는 올바른 여성상을 가진 양육경험이 있는 아이돌보미로 섭외하여 파견함으로써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마련함. 또한, 주말에 아동들끼리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복지관에서 가정에 파견될 수 있도록 교육받은 65세 할머니와 본 기관에서 진행하는 여자 멘토(수호천사)를 연계함. 이후 첫째 아동은 하교 후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방과 후에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함.

- » 또한, 방문과 대문사이 통로에서 목욕하여 거울에 너무 춥다며 따뜻한 곳에서 목욕하고 싶어하는 아동들의 욕구와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며 이사하고 싶어하는 부의 의사를 반영해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에서 진행하는 임대주택지원사업을 신청함. 그러나 모집기간이 아닌데다, 한부모 가정 중 더 열악한 가정의 대기수가 많아 대상자에서 배제됨. 추후 이에 대한 자원을 좀 더 탐색하고자 함.
- » 보호자 부재에 대한 다양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가정지원서비스와 인근 어린이집의 연장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기개입으로 초기 현장조사시 보다 위험사정척도 점수를 8점 낮춤으로서 아동이 빠른 시간내에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함. 또한, 부가 고정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지고 스스로도 이사할 수 있는 경제적 시스템을 마련하게 하고자 저축 등의 재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나란히 결연을 지원하여 부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 양육에 힘쓰도록 지지체계를 마련함.
- » 부가 스스로 이사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추후 개입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자 계획을 수립함.

2) 중기단계(2009.05.~2009.10.)

- » 앞서 여러 가지 서비스로 위험수위를 다소 낮췄으나 신청한 구청의 임대주택지원사업이 대상자에서 배제되어 현 주거환경의 열악한 조건으로 위험사정척도 점수가 11점이 나와 이로 인한 위험수위를 낮추고자 주거안정지원사업공모를 다시 알아봄. 이에 삼성생명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지원사업 '삼성생명 소망램프'에 신청서를 접수함. 그러나 아쉽게도 사업 공모에서 아동가정이 제외되어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됨.
- » 아동부는 7월경 재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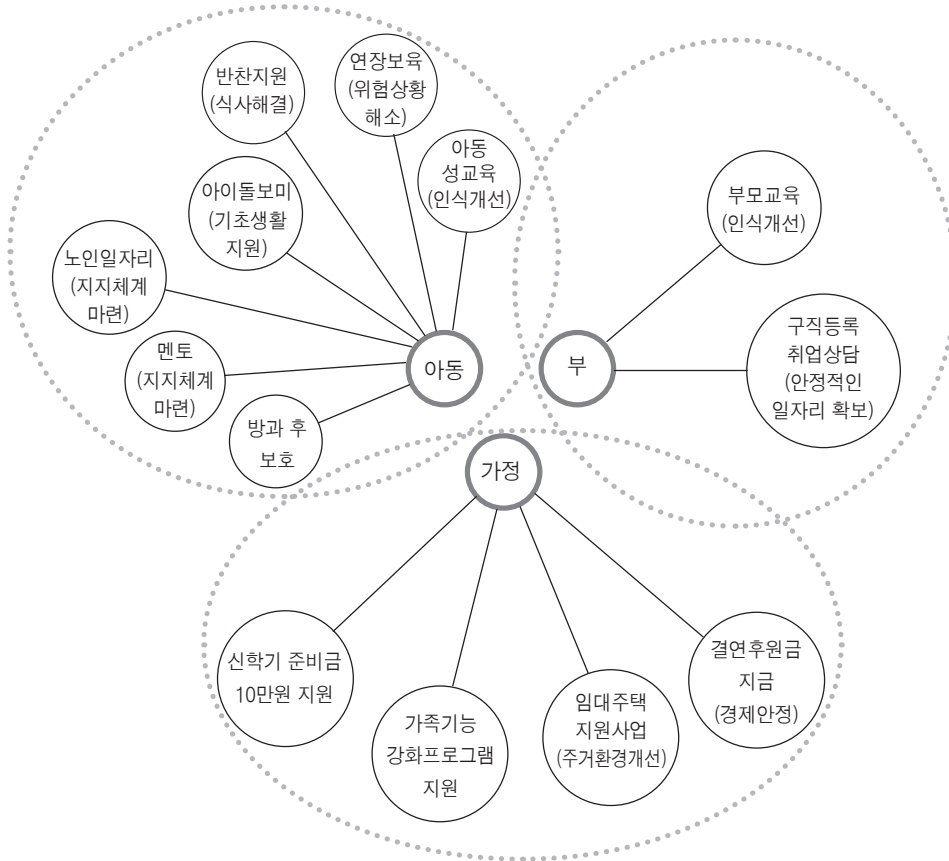
3) 말기단계(2009.11.~2010.09.)

- » 상담원은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다른 외부 지원방법을 모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에게

이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사에 필요한 경제적 수입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지지해 오면서 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이에 부는 주거안정지원사업 ‘삼성생명 소망램프’ 신청 후 대상선정에서 제외된 2개월 이후 집을 직접 마련하여 방 2칸에 내부에 욕실을 갖춘 집으로 이사하였음.

- » 김미진 아동은 계모에게 안겨 부비고 뒤에 가서 안기는 등 계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으로 계모와 아이들간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단란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 부는 구청을 통해 지원된 문화 바우처사업(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과 근래 주말을 이용하여 문화생활과 나들이를 하면서 아이들과 모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아이들에게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하였음.
- » 최근 학원연합회가 연계되어 첫째 아동의 신학기 준비금으로 10만원이 지원되어 지지체계를 마련함.

생태도



VI. 사례종결

목표	실천	실현/달성/종결사유
<p>피해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영양 섭취를 통한 건강한 성장 발달 · 기초적인 생활 지원을 통한 올바른 양육 모델상 성립 · 연장보육을 통한 위험상황 최소화 · 성교육을 통한 자기 몸에 소중함 인식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십자 반찬 서비스 제공 ·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수호천사,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고용복지지원센터 자원봉사자 등 가정봉사원 파견 · 연장 보육 가능한 어린이집등원 및 지역아동센터 통한 방과후 보호 · 협력대학교를 통한 아동 성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현/달성 가정봉사원의 파견으로 초기개입시 눈에 띄게 불량하던 아동의 청결상태가 좋아져 아동요인 위험척도 점수가 3점 감소되었음. 또한, 초기 보호자 부재로 아동에 대한 의료적 처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가정봉사원이 지원되면서 적절한 시기에 의료적 처치가 이루어지게 되어 보호자요인 위험척도점수가 2점 감소되었음. 더불어 아침밥을 굶던 아동들을 적십자에서 지원된 반찬을 이용하여 가정봉사원이 챙겨주면서 기초적인 끼니를 해결해 주었음. 또한, 연장보육등을 통해 아동끼리 집에 있는 위험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 이후 옷을 벗고 다니는 등의 행동이 사라짐. · 종결사유 위험사정척도 점수가 서비스실천에 따라 초기 개입보다 총 5점이 낮아져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그중 아동위험요인점수가 3점에서 0점으로 변화되어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어 종결함.
<p>학대 행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교육 통한 올바른 양육방법 제시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립 능력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기관 부모 교육 실시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부의 자립을 위해 지지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현/달성 초기 아동들이 옷을 벗고 다니는 행동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후 부가 계절에 맞게 아이들 옷을 잘 입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아동과 부모의 교육을 통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행동으로 실천된 성과라 보여짐.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제로 부가 직접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됨. 이에 위험사정척도의 생활환경요인 중 주거환경요인이 3점 감소됨. · 종결사유 위험사정척도 점수가 서비스실천에 따라 초기 개입시보다 총 3점이 낮아져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행위자가 부모교육을 통해 인식이 변화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직접 마련하면서 설정한 목표가 달성되어 종결함.

목표	실천	실현/달성/종결사유
가정환경 · 주거개선을 통한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 · 결연등을 통한 가정경제규모 안정화	· 구청 임대주택지원사업 및 삼성생명 소망램프 공모 · 나란히 결연 연계 · 취업정보은행 통한 구직등록 취업상담 연계 · 구청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 지원	· 실현/달성 외부 자원을 통한 주거개선은 공모에서 탈락되어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부가 자립하여 집을 마련하게 되어 가정환경의 위험요인이 감소되었으며, 결연을 통해 위험사정척도의 생활환경요인 중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어느 정도 동원할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대한 위험요인이 1점 감소하게 됨. 또한, 유관기관의 여러 다양한 서비스 지원으로 필요한 지지체계가 생기면서 위험사정척도의 가족요인 중 사회적 지지망에 부재에 대한 위험요인이 2점 감소하였음. · 종결사유 위험사정척도 점수가 서비스실천에 따라 초기 개입 시보다 총 3점이 낮아져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짐. 결연을 통해 가정경제가 다소 안정화되고 다양한 지지체계가 마련되면서 사회적 지지망이 확보되었으며, 위험요인 감소 및 설정한 목표 달성으로 종결함.
총 소견	초기 개입시 위험사정척도 점수가 19점이었으나 피해아동, 행위자, 가정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실천을 하게 되면서 위와 같은 사유로 총 11점의 위험요인이 낮아져 8점으로 사례를 종결하고자 함.	

1. 위험사정척도 결과

- » 초기 1차 위험사정척도 점수가 19점이었으나, 가정봉사원의 파견으로 아동의 청결상태가 좋아지고 적절한 시기에 의료적 처치가 이루어지면서 아동과 보호자 위험요인이 5점 감소됨.
- » 이어 부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방이 2개이고 욕실이 내부에 갖춰져 있어 아동이 방문과 대문 통로사이에서 목욕하여 감기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며, 대문이 잠기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여 생활환경요인 중 주거환경 위험요인이 3점 감소됨. 더불어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이 결연 후원을 통해 어느 정도 동원될 수 있게 되면서 생활환경 요인 중 경제적 위험요인이 1점 감소됨. 또한,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여러 다양한 서비스 지원으로 필요한 지지체계가 생기면서 가족요인 중 사회적 지지망 부재에 대한 위험요인이 2점 감소함.
- » 따라서, 총 11점의 위험요인이 감소하여 사례종결시 위험사정척도 점수가 8점으로 안전하게 사례를 종결함.

2. 상담원 소견

- » 초기 개입당시에는 아동들의 학령 전 어린 나이와 오래된 방임으로 인한 자기대처능력 저하, 양육자의 부재, 끼니 거름, 추운 날에도 옷을 다 벗고 외부로 돌아 다니는 등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인지 부족, 이로 인한 성적 노출 가능성 극대화, 방문과 대문이 내려앉아 문이 잠기지 않는 등 외부인을 통한 위험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여러 요인들로 척도 표면상 결과가 원가정보호가 원칙으로 나왔으나,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는 긴급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
- » 그러나 부와 아동거취에 대해 결정하면서 부의 강한 양육의지를 엿볼 수 있었고, 아동과 부의 긍정적인 애착 형성이 원가정 보호로 결정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강점요인으로 작용하여 원가정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 사회내의 여러 자원들을 탐색하게 되었음.
- » 이에 관할 구청을 통한 통합사례회의를 열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가정안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마련해 원가정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앞으로도 설정한 계획수립 및 목표에 따라 가족보존을 위한 기관간의 협력체계와 가정의 지지체계가 잘 마련되어지게 하여 시설입소를 통한 보호보다는 원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가정 안에서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VII. 사후관리

- » 초기 개입당시 아동 가정에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단기계획으로 설정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1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기초적인 생활지원 및 지지체계를 마련하고, 연장보육 가능한 어린이집 등원을 통해 보호자가 부재한 위험상황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함.
- » 현재는 부의 노력으로 주거환경도 안정적으로 개선 되어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나, 사후에 장기적으로 부와 아동이 현 방임된 양육 상황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의 양육태도의 변화를 꾀하고 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원가정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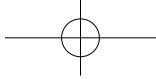
VIII. 심사위원 평가 종합의견

- 학령전 아동에 대해 양육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방임된 피해아동들이 자기보호기능의 부족으로 일반아동들보다 성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았고 식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아동의 안



전과 보호환경 상 분리가 불가피했던 사례에 대해 가족의 강점과 지역사회자원연계를 통해 가정에서의 아동분리를 예방하고 가족보존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사례임.

- 아동 부의 양육의지와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 등에 대한 상담원의 관찰 및 판단을 바탕으로 가족의 강점을 지지하고 사회적 지지자원을 확보하고 연계하였으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친부의 자녀양육의지에 초점을 두고 친가정 보호를 이루어낸 노력이 돋보임.



사례 6

말할 수 있는 아이, 하지만 배우지 못한 아이

• 기관명 :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숙한 친모에 의한 물리적, 의료적 방임 사례이다. 아동은 특히 장애가 의심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치료와 보호의 손길이 필요했지만, 친모는 본인의 흥미에 맞춘 생활을 영위하느라 주로 아동을 집에 방치하였다.

당시 친모를 도와줄 친인척 자원이 없었고 친모도 아동을 양육할만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시설에서 보호하였지만, 이후 더 커진 친모의 아동 양육 욕구와 더불어 원가정 환경의 상황호전으로 인하여 가정 복귀하게 되었다.

원가정 복귀 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며 불안했던 친모의 양육을 보완시켰고 또래관계 속에서 아동의 자연스러운 발달 증진을 꾀했다. 아동은 선천적 안검하수증과 발달장애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신세계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안과수술을 진행했고, 치료실에서 언어치료를 포함한 전반적인 발달치료를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상담원은 친모와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동양육을 지속하는 친모를 지지했고, 전문 멘토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주 1회 친모와 아동을 모니터링하며 아동은 가족내에서 건강히 성장하고 있다.

I. 사례개요

아동성명	조정현(가명)	아동 성별 및 연령	남, 15개월
학대행위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김혜란(친모, 가명)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여, 25세
학대유형 (중복응답)	<input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II. 신고접수

2007년 1월 26일 오후 6시경 이웃으로부터 신고됨. 친모와 아동 단 둘이 거주하고 있는데 친모는 아동 양육에 신경 쓰기보다는 바깥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거나, 남자들을 만나고 오락실을 다니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함.



아동은 장애가 있는 듯, 혼자 걷지도 앉지도 못하며 눈을 잘 뜨지 못한다고 함. 당시 추운 겨울날 이었는데 친모는 난방도 되지 않는 방에 아동만 혼자 두고 우유병을 옆에 세워놓고 문을 잠그고 밖에 나간다고 함. 목욕도 시키지 않고 우유도 제대로 먹이지 않으며 옷도 제대로 입히지 않는다고 함.

이웃은 이렇게 두었다가는 아동의 생명에까지 위험이 있으리라 판단되어 이틀 전에는 보다 못해 아동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가 아동을 데리고 나와서 돌보았다고 함. 당시 친모는 새벽1시경 집에 들어왔다고 함. 신고자는 친모에게 이웃 어른으로서 훈계했지만, 신고당시에도 또 다시 친모가 오후 1시경 집에 나갔다가 계속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함.

Ⅲ. 현장조사

▶ 현장조사일 : 2007.1.26, 1.27

신고 내용으로 판단하기에 심각한 방임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접수한 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여 경찰 동행 하에 즉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했음. 아동의 집은 항구 근처 언덕에 위치한 다소 열악한 주택들의 밀집 지역이었고, 방문은 잠겨 있었음. 집 밖에는 술병과 담배꽂초가 쌓여 있어서 아동이 살기에 적합한 생활환경으로 보이지 않았음. 아동이 집안에 혼자 있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음.

아동은 일반적인 15개월의 발육상태 보다는 발달이 매우 저하되어 있다고 외관상 판단되었으며 의복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 목욕을 시키지 않아 기저귀 안 사타구니 쪽에 때가 끼고 혈어 있음을 확인함. 이불이며 세간 물건들이 어질어진 찬 방에서 혼자 누워 있던 아동은 갑자기 등장한 여러 사람에게 울음을 터뜨렸음. 조사안내문을 붙여놓고 아동을 응급 분리하여 쉼터 보호함. 이후 친모는 밤 10시경 전화가 왔음.

다음날 오전 11시경 친모상담을 통해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함. 친모는 전날 오후 1시경 집을 나가서 밤 10시경까지 집에 들어 올 때까지 아동을 혼자 둔 것을 인정했음. 상담원이 아동의 생명에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 설명하니, 친모는 아동이 어느 날 방바닥에 둔 젓병을 스스로 먹는 모습을 발견한 후부터 우유를 먹도록 젓병을 옆에 두고 밖에 갔다는 이야기를 함. 아동의 건강상태에 대해 확인하고자 했으나 친모는 정확히 알지 못했고 어떤 치료가 필요하며 얼마나 진행됐는지 설명하지 못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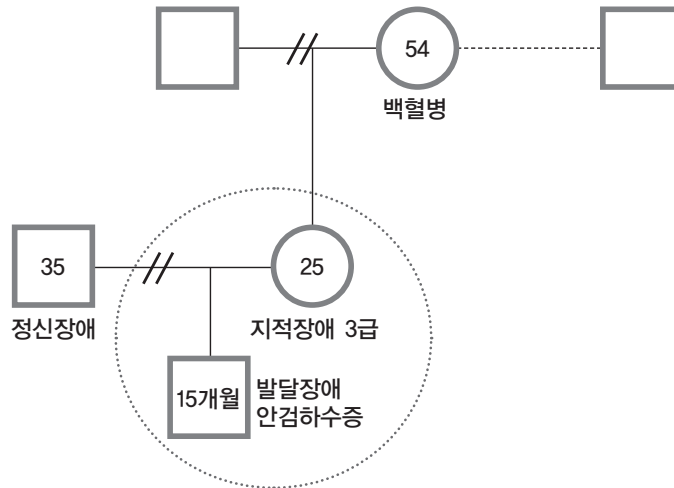
친모는 미성숙한 양육태도로 아동에게 필요한 양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했음. 아동의 건강이 매우 우려됐기 때문에 아동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시설 연계를 제안했고, 친모는 초기에는 본 기관의 상담 자체에 거부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었음.

친모는 이혼 후 친가와는 연락이 두절됐으며 아동양육 기술이 부족한 친모 대신 아동의 외조모가 아동 양육을 도와주었는데, 외조모가 백혈병이 발병되면서 아동양육에 신경 쓰지 못했고 친모의 아동 방임이 심각해 진 것으로 보였음. 상담원과의 상담에서 외조모는 아동의 시설보호를 원했고,

외조모와 친모의 논의 하에 아동의 시설보호를 결정함.

IV. 사정

	성명	성별	연령	관계	동거여부	직업/학교	비고
가족사항 (아동포함)	조상현	남	35세	친부	비동거	무직	정신장애
	김혜란	여	25세	친모	동거	무직	지적장애
	조정현	남	15개월	아동	동거	어린이집	발달장애
	김영숙	여	54세	외조모	비동거	무직	백혈병



1. 강점사정

	성명	관계	강점
강점사정	조정현	아동본인	조기 개입과 치료 가능성
	김혜란	친모	교육을 통한 양육방법 습득과 의식개선 가능성
	김영숙	외조모	친모와 의사소통을 하고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질병 완쾌 후 아동양육에 도움 가능

2. 위험사정

	성명	관계	위험
위험사정	조정현	아동본인	안검하수로 인한 시야 미확보 발달 지체로 인한 장애
	김혜란	친모	미성숙하고 올바르지 않은 양육태도로 아동의 생명에까지 위험을 끼칠 수 있음.
	김영숙	외조모	백혈병으로 인한 건강악화

3. 욕구사정

	성명	관계	욕구
욕구사정	조정현	아동본인	표현 불가능으로 파악 불가 하지만 친모와의 분리를 불안해하며 원하지 않음.
	김혜란	친모	지나친 양육 부담이 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아동 양육
	김영숙	외조모	친모의 양육태도 변화 없이는 아동의 시설 보호를 원함.

V. 개입

1. 개입목표

» 친모의 양육기술을 향상시켜 최소한의 외부 도움으로 스스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으며 아동이 가정과 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양육되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자라게 함.

2. 개입계획

1) 장기계획

- » 가정내 아동 양육 : 가정복귀 후 원가정에서 적절한 자원연결을 통해 상담원의 최소개입 만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함.
- »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춘 꾸준한 치료 개입으로 아동의 잠재 능력 내에서 최대한의 수준으로 끌어 올려서 일반적인 또래아동과 함께 교육과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함.
- » 친모의 장애정도는 경미한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 자활함.

2) 단기계획

- » 아동의 안전한 양육: 친모의 양육준비 및 환경이 조성 될 때까지 시설보호를 통한 양육
- » 아동의 건강, 발육 상태 진단 및 치료
- » 친모의 양육 기술 습득, 의식개선

3. 개입과정

1) 초기단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각종 장애가 의심되는 15개월 된 아동이 한겨울 문이 걸린 찬 방안에 혼



자 있다는 신고를 받은 즉시 경찰 동행을 협조 받아 2007년 1월 26일 일시보호 분리를 실시하였음. 보호자를 만날 수 없었고 의사를 파악하지 않은 조치였지만 당시의 위급한 상황에서 최선으로 생각 할 가치는 아동의 생명과 안전이었음. 가족보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당시 상황은 장애가 있는 15개월 아동에게는 생사의 문제일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만들어 가기까지의 시간동안도 지체 할 수 없었음.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 아동을 방임한 친모의 행동이 최초의 행동이 아니었고 자주 행해진 잘못된 양육 태도였음. 단기적으로는 시설보호를 통해 아동에게 안정된 의식주를 제공 해 줄 수 있어야 했고 정확한 건강상태 파악이 필요했으며 장기적으로는 가정복귀와 아동의 치료를 계획했음.

친모는 부모로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장애가 있던 친부를 만나 아동을 가졌고 본인의 의지로 출산 하였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동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리라 보였음. 친모는 친부와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고 조모는 장애가 있어서 친가에서 아동양육에 도움을 전혀 줄 수 없다고 함. 따라서 친모는 양육스트레스를 감당하기에 벅찼고, 책임을 잊고 본인의 흥미 위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 친모는 상담원의 개입에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긴 했지만 본인의 잘못된 태도를 인정하고 분리보호와 앞으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동의함.

아동 분리 이후 시설에서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며 친모가 약속대로 적합한 아동 양육환경을 만들고 개선해 가는지 모니터링 함. 아동 양육시설에서 아동의 건강검진 결과 현재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는 없고 당시 현재로 아동의 영양관리가 중요하며, 아동이 만3세에 이르면 안검하수증 수술을 요한다고 했음. 외조모는 친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원이었기에 친모에 현재 상황 인식이라던지 문제가 되는 의식 개선등은 외조모와 상담을 통해 이끌어 갔음.

2) 중기단계

아동이 분리된 이후 친모는 더욱 강렬하게 아동 양육 의지를 갖게 되었음. 아동이 양육되고 있는 시설에 친모가 아동을 만나러 가는 횟수는 점점 잦아졌고 아동 양육 시설에서도 친모와 상담을 진행하며 원가정 복귀 의견을 제시했음. 상담원이 판단하기에 다소 이른 감이 있기도 했고 불안한 요소가 많았지만 친모의 욕구를 존중할 필요가 있었고, 점차 변화를 보인 부분도 있었음. 그렇기 때문에 상담원의 역할로 아동의 가정에 자원 연결과 모니터링이 더 절실했음. 명절 연휴를 통해 임시 원가정 복귀를 경험하게 했고, 2007년 10월 10일 아동이 가정에 복귀한 후에는 친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나 재학대 방지에 대한 상담을 철저히 함. 행정기관과 경찰에서는 이미 아동의 가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기 수월했음. 아동 가정복귀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모니터링과 만약의 상황에 필요한 개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함.

먼저, 친모의 욕구도 있었고, 주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아동의 발달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장애통합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원시켰음. 이 과정에서도 최대한 친모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챙기도록 이끌었고 상담원의 개입은 최소화 하려 함. 또한 아동은 시설양육으로 기본적인 건강상태는 확인됐으나 그 밖의 정확한 장애 진단 확인이 필요했고, 더불어

치료개입이 계획되어야 하는 시기였음. 따라서 의료기관에 확인한바 아동은 선천적 안검하수증으로 눈꺼풀이 밑으로 처져서 시야가 확보 안되는 상황이었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판정됨. 그리고 발달치료실에서 특수교육 전문가로부터 진단 받은바 아동이 건거나 말하지 못하는 것은 선천적인 기능상의 문제가 아닌 교육과 훈련이 되지 않아서인 것으로 확인됨. 본 기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여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로도 이상이 없다고 진단 받았음.

안과 수술과 발달치료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비도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과정이었음. 친모는 치료비를 충당할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담당 상담원은 후원 받을 수 있는 자원을 알아보게 되었고 신세계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2008년 2월 기업으로부터 치료비 2000만원을 지원 받았음. 2008년 2월부터 즉시 언어치료를 포함한 통합적 발달 치료를 실시했고, 2008년 5월 8일 안과 수술을 실시함. 수술과정은 아동도, 보호자도, 담당 상담원도 힘든 과정이었음. 하지만 이후 아동의 발달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음. 시야가 자유롭게 확보되니 아동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었음. 하지만 안과수술 후 아동의 건강관리가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2008년 7월 2일부터 멘토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지속 관리를 해 주었음. 당시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오랫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전문 자원봉사자로 1:1 전문 관리가 가능했음. 뿐만 아니라 등원하고 있던 어린이집의 협조를 받아 관리를 세밀히 부탁했음. 그리고 아동의 가정복귀 후부터는 외조모의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에 외조모로부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특히 이 시기에는 친모보다 외조모의 양육 손길이 아동의 건강관리에 힘이 되었음.

3) 말기단계

아이에게 필요한 특수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음.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치료비는 이미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여 지원받았음. 친모와 아동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치료실에서는 본 기관에서 지원가능한 치료비용 이외의 추가 부담금은 후원을 통해 교육이 끊이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배려했음. 안과 정기검진도 진행되었음. 초기에는 상담원이 동행했지만 이후부터는 외조모와 친모가 직접 진료를 다녔음. 아동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자극을 받지 못하여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부분임.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빠른 시기에 발견되어 조기 개입이 진행된 점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음. 신고자였던 주변이웃은 현재까지도 아동의 가정을 지켜보며 도움을 주고 있고, 상담원과 전화통화로 모니터링해 주기도 했음. 아동은 치료 후 점차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단어를 말하기도 함. 친모는 이런 변화로 부모로서 아동 양육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봄.

물론 친모는 아직까지도 아동 양육에 미숙한 부분이 있음. 친모는 일상수행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남에게 의지하려하는 경향도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친모가 스스로 아동양육이나 가사 일을 진행하도록 코칭하는 방향으로 중기단계때 연계했던 봉사자에 이어 다른 전문 멘토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하고 있음.



VI. 사례종결

1. 피해아동

아동의 안전한 양육이 확보됨. 안과수술과 치료, 발달치료가 진행됐음. 아동의 원가정 복귀후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어린이집과 치료실을 다니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후 적응이 됐고 현재도 지속해서 다니고 있음. 이런 활동은 아동의 발달치료적 효과로만 볼 수 있는게 아니라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됐음. 더불어 안검하수증 수술로 시야가 확보되면서 외부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어 발달을 급속도로 성장시켰음. 하지만 주 양육자인 친모의 언어가 어눌하기 때문에 적절한 모델링이 부족한 부분이 안타까움.

2. 학대행위자

초기에는 기관에 거부적이었고 아동을 분리해간 기관이라는 인식만이 컸음. 하지만 이후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원과 라포를 쌓고 친모와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각종 자원 연결을 통해 친모의 양육을 보완했음. 친모도 스스로 양육에 적극적으로 변화를 나타냄. 아동이 걷고 말하는 과정을 상담원에게 자랑을 하기도 하고, 아동이 입다가 작아진 옷과 신발 등을 필요한 다른 아동에게 주라며 기관에 전해주기도 함. 최초 신고접수 당시 미성숙한 친모의 태도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판단됨.

3. 부모 및 가정환경

집이 어질러져 있었고 집 주변이 술병과 담배꽂초로 더럽혀져 있던 환경에서 깨끗하게 변화됨. 도배와 장판을 깔고 아이 양육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함. 아동에게 적절하지 않는 환경과 적절한 환경이 무엇인지 구분하여 깨끗한 환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유지하도록 친모에게 지속 언급하며 교육함.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던 외조모가 완쾌되면서 아동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음.

4. 기타 상황

기관에서 제시한 서약의 부분을 친모가 이행하며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음.

5. 위험사정척도 결과

최초 42점에서 원가정 복귀후 환경의 변화로 11점으로 감소했음. 척도 수치상 종결할 수 있는 점수는 아니지만 아동이나 친모가 갖고 있는 장애 자체를 감소시킬 수는 없으므로 더 이상 점수를 낮추는 것은 불가능함.

6. 상담원 소견

약 9개월간 아동은 타기관에서 시설보호 되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 안정을 찾게 했고 영양관리에 중점을 뒀음. 그 동안 친모는 본기관의 개입과 더불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시도를 꾀했음. 친모는 스스로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상담원에게 도와줄 봉사자를 요청하기도 했으며 행정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원을 알아보기도 했음. 하지만 제도권내에서 아동이 대상이 되는 공식적 자원이 크게 없다는 한계도 있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히려 친모는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자발성을 키웠고, 부모로서도 성장하는 과정을 보였음.

사실 친모가 완벽하고 전혀 위험요소가 없는 양육자로 변화한 것은 아님. 종결 후 사후관리 시점도 훨씬 넓은 지금까지도 멘토 자원봉사자 연계가 필요할 정도이고, 앞으로도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아야 하는 가정임에 분명함. 최선의 개입을 지속적으로 유지 했고 현재시점으로 볼 때는 과거보다 매우 좋아진 환경속에서 원가정 보존의 원칙이 지켜지며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임. 이렇듯 분명히 친모의 의식자체가 변화한 부분이 있었고, 본 기관에서 개입하기 위한 아동학대적 위기상황은 끝났다고 보임.

VII. 사후관리

아동의 안과치료와 발달치료는 지속되고 있음. 아동이 자라는 과정 내내 필요한 부분임. 하지만 담당 상담원이 직접 투입되는 개입은 최소화 하되, 친모와 긍정적인 관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화 연락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지지함.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부족한 친모의 양육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외조모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증가한 부분이 있었음. 상담원은 친모를 지지하는 만큼, 그 이상 외조모를 지지했음. 외조모 또한 최초로 분리보호에 적극 찬성하던 태도와 달리 원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커졌음. 상담원이 모니터링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멘토 자원봉사자가 투입되어 현재까지도 1주일에 1회씩 가정방문을 하여 직접 상황을 관찰함. 아동의 신체발달에 비해 언어능력이 활발하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동에게 대화를 시켜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함. 행정기관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이 실시되면서 아동이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대상자의 정보를 교류하였으며 지속 연계하고 있음.

VIII. 심사위원 평가 종합의견

- 장애를 갖고 있는 친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을지의 판단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정결과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임. 이 사례는 모의 양육방임으로 인해 피해아동이 생존이 위



협반는 위기상황에 대해 신속한 개입을 통해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친모의 가능성에 초점을 둔 진정한 강점관점의 개입으로 효과성을 입증한 우수사례임.

- 아동의 장애가 선천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기능상의 문제도 없는데 적절한 자극을 받지 못해서 생긴 발달지체로 판정됨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과 상담원의 개입이 돋보임. 이 과정에서 최초 거부적이었던 친모의 태도는 상담원에게 호의적으로 관계가 개선되었고 서로 믿음을 가지고 아동 치료를 진행함으로써 친모는 아동 양육에 보람을 갖게 되는 교육의 효과를 가짐.
- 초기의 분리보호결정 등 적절하게 위기개입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가족재통합의 과정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아동의 전문가 치료와 모에 대한 양육태도의 개선 등이 계획대로 이루어짐.



2010 아동보호전문기관 10주년 기념 아동학대 우수사례보고서

-
- 인 쇄 일 : 2010년 9월
 - 발 행 일 : 2010년 9월
 - 편 집 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 화 정
 - 편집위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구개발팀
이정은, 김정희, 이계화, 전수영
 - 발 행 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2)558-1391
 - 후 원 : 삼성KPMG
-